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284回國會 第 2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9月23日(水)

場 所 第3會議場(245號)

議事日程

1. 공직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

審査된案件

1. 공직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 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안이 의결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 깝게도 그동안에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6월 3일에야 첫 회의를 갖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개월여가 지난 오늘에야 두 번째 회의를 갖게 된 데에 대해서 정치권에 몸담고 있 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내지는 정개특위를 대신 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

촉박한 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생략된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또 공술 인으로 나와 주신 여러 교수님께도 특히 죄송하 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회 정개특위 위원 들이 서로 인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시간을 헐어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한나라당의 간사위원으로 선임 되신 장윤석 위원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委員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위원입니 다.

지금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국 회에 구성되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 그 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늦다고 할 때가 늦지 않다'는 말도 있 습니다마는, 이제 이 공청회가 열려서 본격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기 때문에 국 민들의 뜻을 귀담아듣고 바람직한 선진 정치문화 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다음에는 민주당의 간사위원으 로 선임되신 서갑원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 오.

○**서갑원 위원** 전남 순천의 민주당 서갑원 위원 입니다.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이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그간에 지지 부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일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바람, 열망에 부응해서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출마하는 모든 분들이 출마 준비에 소홀함이 없 도록 연말까지는 필요한 모든 제도들을 정비해서 그들이 제대로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최선을 다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다음은 구상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서울 강서갑의 구상찬 위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수인사, 첫인사 개회만 하고 아무 일도 못한 채 3개월이 넘었습 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혁하자고 하는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부터 정치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이런 자조마저 듭니다.

기대가 컸던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함을 전달하고요.

또 존경하는 김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감사합니다.

이범래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래 위원 서울 구로갑의 이범래 위원입니다.

구상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개특이 구성된지 3개월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번만큼은 공급자 입장이 아닌 정치의 수요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선거법과 선거제도 전반에 걸쳐서 바꾸는 데 한번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정진섭 위원님!

○정진섭 위원 '갓 쓰다 장 파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임기가 일단 9월 30일까지라고 생각하면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지방선거와 관련되어서 선거법 개정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이 문제와 관 련해서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나 학계, 시민단체에서 공정한 룰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공청회 기대합니다.

- **○위원장 김충조** 다음, 양승조 위원님!
- ○양승조 위원 천안갑의 양승조 위원입니다.

저 역시 특위가 발족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못 하고 이제서 수인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합의하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바람이겠으나 일단 선후를 우리가 정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관련된 부분은 미리 합의해서 결정해주는 게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조** 주호영 위원님!
- ○주호영 위원 반갑습니다. 주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조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작년 1 년간 수석부대표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서 갑원 간사님 모시고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입각을 하면서 상임위를 정리한 데 가 많습니다마는, 정치개혁특위는 또 특임장관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참석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정부와 조율할 일이 있다든지 또 서로 제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예, 주호영 위원께는 장관으로 임명되시리라 믿고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 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9월 1일부터 금년도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입법 활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결산 활동그리고 각종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준비 활동등등 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은 시간에 중복되는 일정을 많이 갖고 계시리라고, 그렇게해서 오늘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를 못 하신 위원들께서는 다음 회의 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인사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에서 수고해 주실 새로 보임해 오신 이정득 입법 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 다. 또 여기 방청해 주신 분들도 아시리라 믿고, 특히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느 때보 다 따갑고 날카롭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이 화두는 정치가 존재하 는 한 끊임없이 항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해결해 내야 되는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 다. 정치풍토 면에서 그리고 또 정치 주체의 정 치의식 면에서 그리고 정치가 이행되고 있는 틀 또는 규범 면에서 항상 새롭고 선진적인 그러한 방향이 설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맡게 되어 있는 소임인 국회관계법 또 정당, 정치자금법 그 리고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에 대한 입법 활동을 위해서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에 걸쳐서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관련, 내일은 정당, 정치자 금법 관련 그리고 25일에는 국회 관련 공청회를 연이어 갖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 고요.

위원님들 인사 말씀할 때 제가 빠졌네요. 저는 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막중하기 짝이 없는 임무 를 부여받고 양 어깨가 요즈음 나날이 내려앉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충조 위원입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에 지난번 3월 3일자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개 특위 말고 2개의 특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방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오늘 허태열 위원장께서 여기까지 귀중한 걸음을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 했던 원혜영 의원께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그리 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그리고 전국해상산 업노동조합연맹에서 그리고 권영길 의원의 소개 로 삼십여 분, 정확히는 38인의 방청인들이 자리

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1. 공직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

(10시21분)

○**위원장 김충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 거제도에 관한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 취지 그 리고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5건의 공직선 거법 관련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공직선거제도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신 공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법 률안 심사에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참고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공술인 여섯 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 을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공직선거제도에 관한 이 공청회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진행순서 그리고 회의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술인으로 나오신 분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여섯 분의 공술이 모두 끝난 다음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고, 이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공술인들께서 답 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술인들의 1인당 공술시간은 15분 이내로 되 겠습니다.

공술인들께서는 가능하면 오늘 공청회 안건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술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 사하겠습니다.

국회법상 이 공청회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간주 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위원회 위원들에 한해서 여기서 발언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술할 순서에 따라서 공술인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서부터 조진만 인하대학교 교수이 십니다.

다음, 김영태 목포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손혁재 경기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임성호 경희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이연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 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십니다.

제일 오른편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지금으로부터 공술인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교수이신 조진만 공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조진만**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의 조진만입니다.

급하게 선거제도에 대한 발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요, 제가 부탁받은 부분은 선거제도 일반에 대한 공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의 간단한 짧은 생각을 그냥정리해서 발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 구역개편하고 중·대선거구 도입의 필요성을 제 기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다시 뜨거운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논의가 항상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2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개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호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논의들을 임기 중반에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할 수 있게끔 화 두를 던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행정구역개편하고 중·대선거구 도입 정도를 통해 가지고 선거제도 의 목적인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라는 게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제도 자체가 그렇지만 다수 가 유리한 쪽으로 정치제도들이 개혁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고 논란 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화두를 제기하고 지금부터 좀더 다양하 고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조금 건설적인 방향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 다.

그러면 일단 선거제도 개혁의 논리나 원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살펴보면, 각 나라들마다 선 거제도를 개혁하는 이유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바를 다얻기는 힘든데, 일반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대표성을 제고하는 관점입 니다.

이것은 유권자, 국민들이 자기의 진실된 선호,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 소수당을 좋아하면 소수 당한테 찍을 수 있고 다수당을 좋아하면 다수당,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자기 선호를 그대로 표출하고 그렇게 표출된 선거 결과가 정 치적인 결과인 의석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선거제도가 개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로 비례 대표제적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반면에,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정치적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대표성이 너무 높다 보 면 다당제도 되고 연립정부도 되고 여러 가지 정 국의 불안정 요인들은 각 국가들마다 야기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대표 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정치적인 안정성이나 책임 성 문제를,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통해서 특정 정 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영국이나 미국처럼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가 기본 골격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대표성하고 책임성, 안 정성의 관계가 상호 교환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 니다. 그러니까 2개 다—정치적인 대표성도 제고 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성과 책임성도 동시에 제고 한다—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병통치약 같은 선거제도는 거의 현존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현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과연 선거제도의 목표, 원인을 정치적인 대표성 제고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책임이나 안정성에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선거 제도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차원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의 원인이 지적되 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의 타파입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꼭 선거제도 때문 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라는 이 제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심화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화가 이행되고 절차적 민주주의 를 구축한 상태에서 좀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서 민주주의 공고화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민주 주의 운영에서의 어떤 원활함을 위해서 선거제도 를 발전적인 방향에서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의 특수 적인 상황으로 했을 때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느냐는 논의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선거제 도를 채택해야 되겠는가, 어떤 방향으로 선거제 도를 개혁해야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투표 방식이라든지 의석 배분 이런 것에 따라서 선거 제도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거제도 도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형태의 선거제도 유형 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비례적인 선거제도고 또 하나는 다수결적인 선거제도가 존재합니다.

비례적인 선거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 치적인 대표성을 제고하는, 유권자의 선호 그대 로 정치적인 결과가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고, 다수결적인 선거제도는 정치적인 대표성은 좀 떨 어지지만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장악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 도를 말합니다.

이런 양 유형 외에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1인 2표제 방식이 있습니다. 1인 2표제 방 식이 있는데, 1인 2표제 방식은 두 가지 차원으 로, 다수결적인 부분하고 비례적인 부분이 혼용 되어 있는 형태이기는 한데, 그것도 우리나라같 이 병립적으로 하느냐 정당하고 지역구하고 따로 따로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연동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다수결적인 성격을 보이고 좀더 비 례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같이 1인 2표 병립제 같은 국가에서는 좀더 다수결적인 게 기본이 되고 좀 더 비례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수준 의 선거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독일이나 뉴 질랜드 같은 데서 하는 연동형 1인 2표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례적인 선거제도라고 말씀드 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선거제도 유형을 보면 다수결제도 가 많고 그렇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나 라들이 원형 같은 선거제도들이 있습니다. 좋다 고 이미 검증되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한 제도 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적인 유형 분류표를 그려 봤더니, 빠진 부분이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해서 채택하려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거제도인데, 사실 그게 전 세계에서 6개국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개국도 아프가니 스탄은 좀 들어봤지만 팔라우, 나우루, 어디 군 도. 이렇게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선거제도를 채 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보편적 으로 좋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선거제도의 특징 그리고 전 세 계적인 분포를 고려했을 때 한국의 선거제도 개 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시사 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현재 한국이 선택하고 있는 1인 2표 병립 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선 거제도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선거제도 자체 가 절충안이고 타협적인 그런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치권에서는 이게 가장 채택하기가 용이합니다. 다수자도 보 장하고 소수자도 보장하고 서로 완충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채택하기가 가장 용이하다, 그런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제도 는 최근에 많은 국가들에서 채택을 하고 있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경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향후 선거제도 개혁을 도모하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만 은 않아 보입니다, 이 선거제도의 특성상. 다수결 선거제도, 비례적선거제도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활발하게 논의가 될 텐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이게 절충적인 성격이라 개혁되 기도 힘들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 제도에 대한 불만 아니면 개혁에 대한 요구는 지

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제도 이상이 대표성과 안 정성, 책임성 이렇게 일반적인 이상이 있는데 이 것으로부터 둘 다 만족하지를 못하는 선거제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 지속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보면 민주화 이후에 정치개혁 방향도 그렇고 국회제도고 정당제도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합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치제도들이 개혁이 되어 왔습니다. 1인 2표 제도가비판도 많고 개혁도 어렵지만 결국은 그렇다고치면 좀더 비례적이고 합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현행 1인 2표 병립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는 그 방향이 가장 좋은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거제도가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것보다 좀더 나아가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비례적인 방향, 제가 표에서…… 1인 2표 연동제라든지, 병립제가 아닌 연동제라든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라든지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게 그 방향성에는 부합하고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라고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중·대선거구제를 제기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채택하는 국가가 굉장히 적고 민주국가들이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많은 부정적인 효 과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국가 중에 이 제도를 채택한 마지막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를 개혁한 원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수당이 되려면 주요 정당들은 복수의 후보자들을 공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정당의 결속력도 약해지고 당 내의 파벌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자금도 많이써야 되고, 유권자 대상으로 선거구가 커지니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득표로 득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거자금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파벌정치, 정당정치 약화, 금권선거,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물론 중 · 대선거구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보다

는 정치적인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면에서는 1등하고 4등 간의 차점자라든지 그다음 차점자 간에 득표 차이가 많이 날 때에는 이 역시 정치적인대표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논의들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어떤 선거제도 를 채택할 때 이전에, 그러니까 단순다수 이전 선거에서 나온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하든 그것을 토대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되면 선거제도의 효 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좋다 이렇게 하는 논의 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구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선거제도가 채택이 되면 새로운 선거제도 안에서의 인센티브 구조가 생깁니다. 유권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을 그렇고요.

지금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결과를 통해서 중선 거제 하면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 기했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 중선거구제를 채택 하면 그 내부 내에서 오히려 지역주의가 강화되 고 그럴 경향도 훨씬 높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충 분히 존재합니다.

유권자들이 적당하게 표를 분산한다든지, 지역 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 내에서 분산한다든지 아 니면 오히려 더 강하게 지역주의 표를 몰아주는 그러한 현상도 배제하지는 못 한다라는 부분입니 다.

그다음에 중 · 대선거구제와 관련해 가지고, 특 히 중선거구제와 관련해 가지고 단기비이양식 선 거제도를 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선거 제도 중에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도 있습니다. 한 3명에서 5명 정도 뽑는 중선거 구로 하고, 선거구 대표성도 있으면서 비례성도 굉장히 높은, 물론 이게 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 는 이상적인 선거제도로 많이 평가를 받았습니 다. 그렇지만 이게 복잡하고 규모가 큰 나라에서 는 채택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하는 데 하 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선호대 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적으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만 정하면 되고, 그게 표로 전환 되는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저희가 전자개표도 하고 이러는 시대에 별로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 서 이런 부분도 오히려 좋은 선거제도로 채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논쟁이 있는데 과연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 는 것이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좋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제기됩니다.

권역별로 하면 특정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지역 에서 기존에는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던 정당들이 진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율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역시 권역 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다 보면 비례대표의원 역 시 지역주의에, 지역의 구조 속에 포획될 가능성 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본 취지,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직능대표 를 뽑는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고, 오히려 비례대 표 의석을 늘리는 부분이 훨씬 더 합리적인 어프 로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거제도는 사실 개헌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루 어지기가, 진행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렇지만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 그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속적으로 화두로 제 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역시 선 거제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그런 문제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안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당체계라든지 아 니면 통치권력 구조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합 의제적인 민주주의나 다수결적인 민주주의 둘 중 안에 어떤…… 합의가 수준이 좀 낮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다수의 전횡, 독주라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소수의 횡포라고 이렇게 토로하기 때 문에 다수결원칙도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소수 자 보호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선거 제도 개혁을, 특정 선거제도를 채택하기가 사실 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역주의 타파라는 선거제도의 목 적이 이게 과연 가능한가, 어떤 나라든지 지역주 의가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제도를 채택하든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 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의 의식 문제고 정치 문화라든지 토대의 문제지 제도적으로 인위적으 로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이상은 선거제도 차원 에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전반적인 정치적인 대표성을 좀 제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1인 2표 병립제 채택 하는 국가들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비례대표 의석이 적거든요—비례대표를 조금 늘리는 거, 그다음에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아간다면 비례적 인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훨씬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주기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도 있을 수 있지만 실 질적으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분 점정부 출현를 막기 위해서 분리 선거를 하지 않 고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그런 방안들 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 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공청회도 그렇고 역 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와 관련한 논의들은 정치 권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 도 있고 설득력을 얻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 서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 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조진만 교수님 수고하셨습니

다음 순서 들어가기 전에 유기준 위원님 간단 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정치개혁특위가 발족한 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회의를 자주 열지 못해 가지고 정치 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지 못했습니 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모자라는 만큼 우리 위 원회가 열심히 해서 국민들에게 부응하는 개혁의 방향,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말 씀을 잘 들어서 정치권이 모처럼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이춘석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제가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예전 에는 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의식 이 중요해도 담는 그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어떤 제도가 우리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담고 있고 국민의 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지 더 진지하 게 검토해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 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다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영태 교수님 공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목포대학교의 김영태입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공청회 자료집을 제가 상당히 오래 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위 자체의 공청회가 연기가 되면서 시의에 좀 맞지 않는, 다시 말하면 현재 조금 논쟁이 되는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한내용과 같은 부분은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이야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공직선거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혹은 좀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크게 논의가 되고 있는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개혁의 과 제와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정치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 가 이 부분부터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치와 관련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무성히 있어 왔고, 또 그간, 특히 2000 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많은 정치개혁들이 이루어 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차갑고 국민들 의 정치적 불만과 불신은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의 정당정치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즉 정당정치가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정당이 문제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이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정당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우리 정치가 문제다, 서구 유럽 국가나 미국을 보더라도 제도화된 안정적인 정치적 조직들이 존재하고 이 조직에 의해서 정치가 움직여 가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 민주주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당정치의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핵심적인 기본 틀이 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정당정치를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정치제도의 틀들을 짜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을 첫 번째로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주요 쟁점인 선거제도와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선거제도를 어떤 틀에서 짤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민주주의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기본원칙으로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선거제도를 바꾸는 기본원칙가운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철시켜나가야 될 것은 평등의 원칙을 선거 제도 속에서얼마나 담아낼 것인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계속 담아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의 정치문화가 사실은 상당히 갈등의 정치문 화로 점철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도 그러 한 부분들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의 정치문화를 어떻게 좀더합의의 문화로 바꾸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틀속에서 정치제도 내지는 정치개혁 전반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제도의 틀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틀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틀 속에서 저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문제,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선거구제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집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순서를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게 아무래도 서로 같이 보는 데 편리할 것 같기때문에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먼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현대 대의 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 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보면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자료집에 있는 글 에 조금 써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특히 기초의원선거랄 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라 는 주장들이 요즈음 높은데, 아마 다양한 이유들 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봤을 때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폐지 주장의 논거를 보면 생활자치가 자꾸 정치화되어 가지고 갈등만 부추긴다. 제가 단순화시켜서 표현한다면 이런 주장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가 예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당공천이 자꾸 지방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지르 게 만든다 이런 주장들이 핵심적인 주장 같습니 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부분, 생 활자치를 정치화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는 저는 이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 니다.

생활자치라는 내용에는 분명히 행정적인 측면 도 포함이 돼 있지만 생활자치 역시 정치적인 요 소를 담고 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역 내에 존 재하는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 재하고요. 이 사회적 갈등, 즉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은 대단히 제한적인데 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 제이다, 따라서 생활자치가 정치의 영역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은 오히려 지방자치 를 행정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면서 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 고요.

두 번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문제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서유럽의 선거에서도 지방선거가 중앙선거의 대 리전 양상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궁극적인 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정 도와 지방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정도의 차이를 반 영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꼭 정당공천제를 하 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 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중앙을 바라보면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측 면들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공천제 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당공천을 배제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지방자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지방의 자치성이 대단히 수준이 낮은 이런 지역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 앙의 예속화라고 하는 것은 더욱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공천의 문제를 이런 문제로 설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정치인의 비 리 문제는 과거 정당공천제를 하기 이전이나 정 당공천제를 하고 있는 이후나 사실 비리의 정도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밝혀진 결과들을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 에서도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인의 비리를 부추 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정당공천제는 지금 현재 잘 시 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적절하게 조정을 한다면 책임정치나 앞서 말씀드렸던 정당정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대단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특히나 과거에 정당공천이 없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들을 여기 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문제 점들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다, 특 히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당정치를 어떻게 강화시킬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방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당이 실 제로 기초 차원에서, 생활정책 차원에서 자기의 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심

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다음 문제는 선거구제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지난 2006년에 기초의원 선거구제로 2~4인 선거구제를 도입을 했죠,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이유는 주로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명 목이었는데, 제가 발표한 발표집 24쪽을 보시면 지난 4회 기초의원 지역구선거 정당별 당선자 분 포가 나와 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실제로 중 선거구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경우 광주 전북 전남에서는 기초의석을 1석도 차 지를 못했습니다.

또 당시의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물론 일부 지역에서 의석 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중선거구제를 했음에도 불 구하고 거의 획득하지 못했죠.

그래서 실제로 중선거구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목표로 했었던 지역주의의 타파라고 하는 그 효과는 대단히 미미했다, 오히려 실제 결과로 보면 중선거구제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정통 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25쪽의 표 3 당선자 분포를 보면 실제로 19% 이하의 당선 자가 1176명으로 46.8%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득표를 못하고도 당선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 정통성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후보 순번 역시 특정 정당 내에서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서 실제로 가 순번이 대단히 유리한 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하고는 달리 오히려 문제점만 더 부각된 부분들이 상당히 컸 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초 의원 선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게다가 기초의 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도 도입이 됐는데 이 비례 대표의 경우에는 여성의 진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초의 경우에는 사실 의원정수가 대단히 적은데 거기에 비례대표 10%를 이렇게 부과하다 보니까 제1당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1당과 2당이 의석을 나누어 갖게 되는, 투표를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의석 배분이 비례대표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부분도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광역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자

세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뒤에 나와 있는 표 5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광역의회의 경우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 한나라당이 57%의 득표를 했는데 의석은 96%를 차지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57%인데 의석은 97%죠.

지금 현재 우리의 광역의회 선거제도도 사실은 정당의 득표율과 달리 특정 정당이 의석 전체를 독점하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방의회에 있어서 견제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당정치의 강화나 합의제 정치문화를 강화시키는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바람으로는 지방선거 모두에서 전면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주장이, 이런 바람이 대단히 이상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현실성이라고 하는 걸 고려한다면 적어도 50% 이상을 비례제로 확대, 비례의석을 확대하고 나머지는 지역구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지금의지방의회 독점현상이랄지 지방의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타나머지 내용은 발제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구제에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문제점은 제가 생략하겠고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이 있 고요, 두 번째로는 중선거구제와 함께 권역별 비 례대표제를 하자 이런 주장이 있고, 또 중선거구 제를 하되 도시는 현행처럼 중·대선거구제로 하 고 농촌은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로 하자 이런 다 양한 논의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어 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중선거구제 전반을 봤을 때 앞서 조진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 적으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앞서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역주의 타파라고 하는 목표를 내세워 가지고 중선거구제를 기초의회에 도입했 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었고요, 이것은 국 회의원 선거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라고 한 그런 효과는 나타나 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점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첫 번째로 중선거구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정당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명을 공천한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는데 그럴 경우 같은 정당에 있는, 소속이 같은 정당 후보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 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정당정치의 안정성이 깨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중선거구제로 하게 되면 선거구는 대단히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선거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오는 제 반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특정 정당이 1명만 공천을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거 70년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원내의 큰 정당들이 서로 나눠 먹기를 하 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중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거기에다 가 앞서 기초의원에서도 봤듯이 정통성의 문제 역시 또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중선거 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 선거제 도를 개선하는 기본 방향인 지역주의 완화 효과 는 그리 크지 않다, 선거제도를 어떤 것으로 바 꾸든지. 중선거구제를 하건 혹은, 저는 사실은 독 일식의 비례제와 소선거구제가 혼합된 제도로 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도로 바 꾼다 하더라도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없 고 단지 상징적인 효과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 다.

오히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 씀드렸듯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선거에 있어 서 평등성의 원칙, 즉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를 얼마나 줄여나가느냐 하는 이 부분에 좀 더 초점 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독일식의 선거제도가 비 례제적인 요소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서도 우리가 과거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던 소선

거구제라고 하는 즉 인물 중심의 선거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인 측면에 있어서 독일식의 연동제, 즉 비례대표 제와 소선거구제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겠다. 특히나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정당정치 를 제도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선거운동 관련 규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선거에 있어서 사실 우 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듯이 적어도 공직 선거에 있어서, 다른 선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공 직선거에 있어서 투명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큰 틀에서 정치자금에 대 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선거운동과 관련 이 되는 부분은 대폭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인터넷과 관련된 선거운동 부분들은 전면 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김영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 다.

중간에 위원님들 소개해 올리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경재 위원**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좋은 공청회를 갖게 돼서 기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다음, 이용경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이용경 위원**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용경 위 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 으면서도 진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는 좀 더 누적효과가 나는 그러한 진전이 있는 그러한 노력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계속 공술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음, 손혁재 교수님 공술하실 차례네요.

○진술인 손혁재 손혁재입니다.

공직선거제도에서 지금 가장 큰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국회의원 선거구제도겠지만 그 시 일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 치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직선거제도와 관련해 가지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부분들이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50 배 과태료 제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 려지고 적용중지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태료 제도 자체가 위헌인 것이 아니고요, 이 50배라는 게 지나치게 과중하다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또 지난 선거를 보게 되면 이 50배 과태료 제도가 돈선거를 막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제도는 유지하되 배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50배로 되어 있는 것을 10배 이상 50배 미만 이렇게 고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유지해도 헌법불합치 판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시·도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과 인구가 적은 지역구가 4대 1의 편차를 넘었다고 하는 것이 헌법불합치 판정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선거구 간에 상하 인구편차가 ±60%를 초과한 선거구는 인구에 맞춰 재조정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치러졌던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구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상하 인구편차 ±60%를 어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선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시·도의원 선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60%를 초과한 선거구를 인구에 맞춰서 재조정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 가운데하나가 과소인구가 있는, 인구규모가 1만 명 안팎의 작은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들을 다른 자치단체에 붙여 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광역의원 같은 경우기초단체마다 최소한 1인씩은 나오도록 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옹진군이나 울릉군 영양군 이런 지역구들은 예외선거구로 허용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상투표 제도가 있는데요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확대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 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우에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부정선거 위험이 크다는 점 때문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국내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선상투표 같은 경우에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 선거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공개투표가 공공연하게 이 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리투표가 치러 져도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투표를 방지하고 대리투표를 방지할 그런 방법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선상투표 제를 도입하는 것이 조금은 이른 것이 아닌가 싶 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제도, 즉 기초 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이 선거구제를 지난 선거 때 2~4인의 선거구로 개편을 했는데 이걸 소선구제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구도 중·대선거구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기초의원을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봅니다.

오히려 저는 2~4인의 다양한 선거구뿐만 아니라 5인 이상의 대선거구제 도입도 필요하면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지난번에 2~4인 선거구가 문제됐던 것이 아니라 나눠 먹기 식의 2인 선거구제가 많았던 것 말하자면 양대 정당의 동반 진출이 가능했던 그래서 제3당 이하 그리고 무소속들의 진출이어려워졌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듭니다.

특히 지난번에 2인 선거구가 의결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언론보도들을 보게 되면 예 를 들면 의사당이 아니라 관광버스에 의원들을 불러 가지고 관광버스에서 몰래 의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당의 전원을 꺼버리고 의회를 지배하 는 특정한 한 정당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는 통지하지 않고 자기 당 소속 의원들에게만 플 래시를 주고 몰래 모여 가지고 의결하는 이런 과 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방의회에게 선거구 획정 을 맡길 것이 아니라 현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원회가 있는 것처럼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 지고 획정하도록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빈번해 지고 나눠 먹기 식의 2인 선거제가 여전히 만들 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을 막는 고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이 듭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 는데요, 오히려 저는 비례대표를 현재의 10%에 서 30% 정도로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를 배려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능대표의 충원이 라고 하는 원래의 목표를 보더라도 오히려 비례 대표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 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지난번 선거 때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기대했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우려했던 부정적인 양상이 더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줄 서기 문제라든가 공천헌금 등 광범위 한 금품수수 행위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풀뿌 리 생활정치라는 것을 위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 왔던 비정당 후보들이 정당의 힘에 밀려 가지고 기초의원 진출이 어려웠던 그런 점이 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문제들이 기초의원의 정당공 천제를 없애 버려야 할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정당공천제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들은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 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나라 공 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있 는 것이지 정당공천에 대한 자체의 문제는 아니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는 우리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도 중요하지

만 중앙정치와 따로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존재하 는 지방자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 앙정치 개입을 막는다고 지방자치가 저절로 잘되 는 것도 아니고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만 허용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 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기초의원의 정당 표방 금지에 대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 문에 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지난번에 도입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폐지 한다면 같은 정당 후보들끼리 경쟁이 심하게 나 타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유권자들의 선택에 혼 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 다.

저는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정당이 후보 선출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 다. 그래서 저는 경선 관련 선거운동이라든가 투 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탁할 것이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의 구성이라든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 탁함으로써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의 민주성, 역시 이것도 상당한 정도의 노력이 필요 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당 공천제가 되면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소 수 정당이나 또 무소속 후보들의 기호가 뒤로 밀 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현재의 일괄적 선 거기호부여 제도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고 소수 당이나 무소속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괄적인 선거기호부여 제도 를 추첨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총선과 같은 경우에는 원내 제1당이 1 번을 하고 제2당이 2번 하고 이건 문제가 없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통령선거에서도 원내 1당이 1번이 되고 또는 기초의원선거에서도 국회 의석 원내 1당이 1번이 되고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첨으로 기호를 부여하 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지방자치 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보면 20분의 정치개혁특위 위원 가운데 민주당의 박선숙 위원을 빼고는 여성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들이 좀더 많이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했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1995년에 베이징 여성대회 이후에 여성에 대한 30%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됐고요, 우리나라도 여러 분야에서 30% 여성할당제를 위해서 많은 제도를 바꿔 가고 관행을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안 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가 아닌가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6년에 당시 여성계에서 흔히 남녀반장 제라고도 불리는, 즉 한 지역구에서 여성과 남성을 함께 뽑는 남녀동반선출제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6년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도입이 되면서 비례대표 10%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2002년에 3% 수준이었던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2006년에는 13.7%로 늘어났습니다.그런데 만약에 비례대표제가 좀더 확대가 된다면비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걸 기대해 보게되고요.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여성에 대해서 강제할당하는 나라들이 40개국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강제할당은 아니지만 정당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여성에 대한 할당을 해 주는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겠지요, 이게 50개국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유지를 찬성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면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자연히 비례대표제도 폐지가 될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여성의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대안 이런 고민들을 정치개혁특위가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김영태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자유를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국민 생활에 크게 불편을 끼치거나 또 선거비용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운동의 자유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것을 그냥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과 똑같은 방식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면 선관위도 그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민주당의 강창일 의원도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 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 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안이 올라 와 있는데 저는 이 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 면 기부행위 제한을 완화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제한을 완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데 저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선거 때문에 지 방자치단체의 통상적인 행정, 통상적인 활동 이 런 것들이 위축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 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적인, 아주 공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해서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이외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 이 듭니다.

이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손혁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 한 분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박선숙 위원** 민주당 박선숙입니다.

예결위 회의가 지금 같이 개최되고 있어서 부 득이하게 늦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다음은 임성호 교수님 공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임성호 감사합니다.

저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것과 관련된 제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교수님들하고 제가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폐지 하자라는 방안이 오늘날 사회 일각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 저 는 이러한 것이 정당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 니다.

오늘날 정당들에 대한 신뢰는 최악입니다, 아 시다시피. 그리고 정당이라는 말에는 강한 부정 적 뉘앙스가 붙어 있고 심지어는 국회 무용론에 더해 정당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 당들에 대한 기대를 접고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세력에서 새 희망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움 직임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당 지도자 그리고 정당 활동가들의 크나큰 반성이 촉구된다 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여러 부작용을 배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 비용 정치 또 비리의 가능성 그리고 정당에 의한 집단주의적 비민주성, 특히 해당 지역 국회의원 의 군림에 의한 지방자치 훼손,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정당정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는 그러한 당위적 대명제를 고려할 때 정당공 천 폐지 방안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 다.

이러한 건전한 정당정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라는 당위적 대명제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또 일반 시민의 정당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에 개인적 정치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누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당위적 문제점도 경시할 수 없 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으로 인한 여러 현실적 부작용이 있고 또 가능성 이 농후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 드릴 정당정치의 개혁을 통해서 줄여 나가야지 부작용이 있으니 아예 없애자고 한다면 더 큰 폐 해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에 그렇다면 가 장 이상적으로 뭐가 작동이 될까, 저는 또 그렇 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정당이 후보자를 낼 수 없다면 기초지방

선거는 공적이기보다는 사적 성격이 강한 사회조 직 세력 혹은 지방토호 세력에 의해 지배될 위험 성이 큽니다. 이들은 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넓은 공익보다는 좁은 사익에 치우치기 쉽고 좌 든 우든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기 쉽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의 영향력도 과도하게 커지면서 편파성 이라든지 상업적 센세이셔널리즘이라든지 이러한 언론, 특히 지역 언론의 병폐가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당이 표방하는, 또 정당으로서는 정 권을 잡아야 한다라는 현실 이익을 위해서 표방 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공적 비전, 각 정당 이 제시하는 공적 비전은 기초지방선거와 또 선 거 후 기초지방행정이 너무 사적 이익이나 또 이 념성에 의해서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둘째, 정당을 배제할 경우에 또한 지역 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이익 간 조정을 어 렵게 할 가능성도 큽니다.

정당은 정권을 쟁취해야 되니까 특정 지역에만 어필하는 지역적 관점만 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 보다는 보다 전국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이기주의 가 너무 심해지는 것에 제동을 걸 수가 있고 또 상충되는 여러 지역 이익 입장들의 조정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한다면 정당이 지방 차 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 이 경우에는 경상도 전라도 이게 아니 라 경상도 내에서의 각 지역 또 전라도 내에서의 각 지방 이러한 아주 자잘한 지방 이기주의가 난 무하는 가운데 각종 정책 현안을 놓고 조정이 굉 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셋째,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는 지자체장이 든 의원이든 당선자들을 뿔뿔이 개인으로만 존재 하도록 해서 그들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키고 반 면에 행정에 익숙한 관료에—지방 관료가 되겠지 요-강력한 견제를 가하기 힘들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행정 관료는 속성상 효율성과 안정성을 지나치 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또 지역 기득세력과 친 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출직 장이나 의원이 행정 관료에 만약에 휘둘린다면 민주성ㆍ다양성ㆍ개방성 또 혁신성 이러한 중요 한 가치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훼손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넷째,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다면 선거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따라서 더욱 낮아질 것이고 유권자를 지방선거, 특히 기초지방선거 투표장으로 이끌 유인이 더 약해질 것입니다. 물론 8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간 김에 이것저것 다 찍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않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투표율이 만약에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보통 저소득층이나 젊은 세대 또 여성 등 평소 정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 특히 우려를 자아냅니다.

다섯째, 여성이나 또 전문 영역에서 성공한 참 신한 인물이지만 특정 지역에서 인지도나 주민과 의 친밀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 추전 없이 출마할 경우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 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점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를 법제화하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대신 지금처럼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 지도부가 하향식으로 공천을 정하기보다는 보다 민주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향식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정당정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 점을 둠으로써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에 수반될 수 있는 현실적 부작용을 비롯한 보다 넓은 차원 의 정당정치의 부작용들을 경감시키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짧게나마 정당정치가 어떤 쪽으로 변화해야 될지 아주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위기는 곧 한국 전체의 위기를 뜻합니다. 정당이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과연 누가 정당을 대신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있겠습니까? 정당의 이익 대변 기능을 과연 언론이나 이익단체, 또 개별 정치인, 일반 시민에게만 맡길 수가 있을까요? 너무 한계가 큽니다. 또한 정당의 이익 조정 기능을 행정부, 사법부, 또 개

별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경우 과연 민주적 거버 넌스(governance)가 가능할까요?

아직은 정당을 대체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대 안적 주체를 찾기가 요원한 상황이므로 너무 성 급히 정당정치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위기에 빠진 정당들과 또 정당체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정당에 기대되는 이익 대변의 기능, 또 이익 조 정의 기능 이런 것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당과 정당체제의 재활성화를 기존의 집단주의적 경직성의 강화로 오해해서는 곤란합 니다. 당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보다 민 주적이고 유연하게 정당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야 작금의 정당 간 극한대립과 그로 인한 교착이 라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원들이 자율성 있게 활동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또정당 간 대화도 하기 전에 당 지도부가 당론을 미리 설정해 강제하는 관행을 버리게 함으로써정치 과정 전반에서 정당 간의 합리적 대화 그리고 숙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연한 정당체제의 복원,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합리적 정당 간 대화와 합의,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 대변과 이익 조정 기능의실현이라는 대명제에 주안점을 두면서 정당이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 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구당 부활 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첨언을 하겠습니 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공천을 할 경우 각지방의 자율성이 훼손되기 쉽다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지구당 부활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구당이 활성화됨으로써 지나친 중앙으로의 쏠림화, 지역 자율성 훼손을 막을 수 있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에 수반되는 현실적 부작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과 지구 당 부활은 매우 밀접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고 하겠습니다.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할 때 고비용 정치, 현역 의원의 사조직화 등 여러 병폐가 그 근거로 지적 이 되었습니다만 그후 우리의 경험을 보면 지구 당 폐지를 계속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지구당을 대신하는 당원협의회의 운영 경험도 못지않은 여 러 문제점과 편법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현실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하고 유연한 정당정치를 뿌 리내려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감안할 때 비록 진 성당원 모집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인위적으 로 지구당 폐지를 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해 보 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구당은 중앙당의 독주를 막고 정치체제 전반에 걸쳐 권력이 분산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름대로 독립적 위상을 가진 지구당이 없을 경우 지역에 뿌리를 둔 당 액티비스트 (activist)나 당 지지자들은 중앙당에 예속될 수있습니다. 중앙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끄는일방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중앙당과 지구당 간에 권력을 적절히 분산시킴으로써 정당이 집단주의적 경직성을 벗고그다음에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또한 지구당이 상존함으로써 선거기간은 물론 비선거기간 동안 지방정치가 너무 이념적 또 지 역적, 계층적 편향이 심한 사회세력에 의해서 지 배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지 방선거 여기에 정당공천을 과연 폐지하는 것이 좋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더 큰 폐해를 불 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상존시키되 보다 바람 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차원 의 정당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아울러서 지구당 부활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같이 연동시켜 야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임성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강기정 위원님 짤막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정개특위가 운영된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다음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수고해 오 신 이연주 공술인 공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연주** 저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이면서 지금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저를 제외하고 나 머지 분들은 모두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이 자리에서 오늘 공술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전문가들 속에서 또 정당공천과 관련한 폐지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정개특위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 자리에서 제가 발표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충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개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공술을 하셨더라면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와닿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을텐데 비전문가인 제가 나오게 된 것이 또 저희국민운동본부 측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무엇보다 앞에 최고의 전문가들 세 분이 순서대로 나란히 정당공천을 지지하시는, 공천제를 지지하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저희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영원 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당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 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준비된 원고를 함께 참조하면서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정당공천제가 지난 2006년도에 기초의회까지 확대된 가장 큰 이유는 책임정치의 확보입니다.

정치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정당이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고 소속 정당 표방 을 통해 중앙정당이 소속 자치단체장 및 의원들 과 책임을 함께함으로써 지방의정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소속정당 표방을 통해 유권자에게 후보의 정책적 성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 중심 선 거로 인한 돈선거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무책임한 공약의 남발을 제어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도입이 이런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정당공천 폐지론의 이론적 근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초지방자치의 본질에따른 도입의 반대입니다. 지방자치는 특히 기초단위의 경우에는 본질상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비정치적인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생활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생활정치이며 지역 개발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이며 이러한 목적들은 정당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지 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입니다. 중앙정당, 광역단 체장·광역의회, 기초단체장·기초의회로 이어지 는 정당의 수직적 지배구조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특별한 그런 정치 현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의원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는 다른 우려에 비해서 훨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지부 행사 때문에 지방을 내려가서 보면 해당 국회의원께서 참석하시는 행 사에는 그 곳의 단체장과 또 의원, 기초의원들, 그리고 단체장으로 출마할 후보들, 기초의원으로 출마할 후보들까지 모두 다 동원되어서 그 행사 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기보다는 중앙정치의 쟁점이 지방 선거에 그대로 복사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 니다. 특별히 내년 지방선거처럼 물론 이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대통령 재임 기간의 중간에 있는 이런 지방선거는 자칫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심 판 기능에 국한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기 쉽 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선거의 과열 혼탁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고 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선거문화와 결탁하여서 특 정 정당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독 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세 번째,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 중에는 지방정 치인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 서 나타난 각종 공천비리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정당이 공정한 룰을 통해서 자격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불신이 많이 팽배되어 있고 또 그러한 불신 때문에 지역 주민이지역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의 수용도가 낮아지고 지역 의원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폐지의 근거는 지역 인재의 진입 장 벽의 증가입니다. 정당공천제의 찬성논거 중 하 나가 정당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공천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드러난 결 과는 충성도가 높은 인물을 공천헌금을 대가로 공천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지역 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부 인사가 당선되는 사례가 많이 드러 났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당공천제가 어떤 폐 해를 보여주었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나온 얘기와 조금 중복되기도 합니다마는 정치적 지역주의와 결합한 일렬투표의 강화와 공천 비리의 증가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지역주의 선거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후보선택 기준은 소속 정당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 과반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곧 '공천=당선'이라는 그런 등식이성립했고 그러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공천을 받기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비리로직결되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전에 발생한 선거사범은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무려 95%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정당들은 책임정치를 하기위해서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비리사건에 의해서 적발된 당사자들에게만 정당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어느 정당도 책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정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 아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후보 를 공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2007년도 4·25 보궐선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단체장 여섯 곳 중에서 다섯 곳이 무소속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은 그만큼 정당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못

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묻지 마 식 투표의 발생과 공천의 비민주 성이 정당공천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정당의 문제와 정치 현실 의 문제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 5·31 지방 선거에서 지역 정 치인의 자율성이 현저히 저해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당, 광역, 기 초로 이어지는 정당의 수직적 지배 구조로 인해 서 정당공천제는 정당 공천이 아닌 사실상 국회 의원 1인이 낙점하는 1인 공천제로 운영되는 그 런 파행이 곳곳에서 초래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 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곳에서 그런 파행이 초래 되었고 그것은 곧 당선 이후에도 지방 정치인들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지방 인재의 실종과 의회의 파행적 운 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 이라는 그 등식 때문에 정치 신인이나 여성 또 지역을 잘 알고 오랫동안 지역에 봉사해 온 지역 적 인물들이 입성하기에는 그 장벽이 너무나 높 아졌습니다.

그 파행적 운영의 예를 보면 지난 비례대표의 여성인 경우였었습니다마는 한 자리를 두 사람이 나누어 먹는 식의, 2년 후에 사표를 내고 그다음 순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어받는 이런 파행 식 운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비례대표 50% 여 성 공천이라는 명분 하에 실질적으로 여성을 공 천에서 배제하는 그런 경향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례 10%의 여성 몫이라는 것 때문에 오 히려 여성들이 더욱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그러면 정당공천제를 무조건 폐지하면 다시 과 거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과거와 같은 또 그런 혼란이 다시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유권 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제안을 해 보고자 합 니다.

물론 이 제안 속에는 정당을 부인하는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닙니다.

주민공천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후보자의 난립과 후보자의 검증 문제 그리고 정 당이 책임을 지는 그 책임성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다들 우려하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를 검증하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을 대신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공천 기구가 준비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공천제는 지역 주민이 지금까지 단순히 투 표 행위를 통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수동적 입장 에서 후보자 검증 문제와 책임성 문제의 주체가 됨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취지인 참여 민 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자는 무소속 후보와 같이 일정 수의 주민 선거권자 추 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 속 정당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추천자가 후 보의 정책이나 정치적 성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가 결정되면 주민공천심사위 원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주민공천심사위원회 는 일반 주민과 시민단체, 정당 대표, 전문가, 지 역 언론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로 구성 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과연 누가 주체가 되어서 구성할 것인가의 부분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을 위해서 선관위가 담당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선관위가 담당하되 선거법에 저촉 되지 않는 공정한 후보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로서의 검증 기구로서 주민공천심사위원회가 구 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후보의 검증 기준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또 검증을 거친 후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를 사유와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런 주민공천제는 후보의 도덕성까지 검증한 다는 점에서 2006년도 지방 선거 이래 선관위가 시민단체와 주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매니페 스토 운동을 보다 확대한 제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공천제는 공천심사위원이 정당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천헌금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할 수 있어서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 착시킬 수 있고 여성과 정치 신인의 진출을 용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 공천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지역 정치인에 대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행정 및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때문에 주민에 의한 책임 정치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었을 때 여성의 대 표성 확대 방안은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 발 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조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연주** 고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손혁재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 정치의 주역이 여성이고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확대 방안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손혁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동반선출투표제입니다. 선거 결과에 있어서 50% 남성, 50% 여성으로 의원이 충원되는 가장 양성 평등적인 그런 제도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 와 유사한 제도인데요. 여성당선보장제를 제안합 니다.

중·대선거구를 전제로 했을 때 한 선거구에서 3인 내지 4인을 선출하되 한 명을 반드시 여성에 게 할당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 보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안은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는 폐지되는 함께 동반해서 선택할 수 있 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당공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지금처럼 지역정당화 되어 있고 잦은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저희 국민들은 정당명이 수시로 바뀌어서 정당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추락되어 있습니다.

정당이 제 기능을 할 때 정당공천제는 당연히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 이 연주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해주 선거실장께서 공 술해 주시겠습니다.

○**진술인 조해주**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 난해와 올해에 걸쳐 세 번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 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술할 내용은 저희들이 제출한 개정 의견의 제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개정 의견이 80개 항목이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으로 공술하고자 합니다.

73쪽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94년도 제정된 이래 선거 부정의 방지와 고비용 정치 구조를 해소하기 위 하여 지금까지 35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50배의 과태료를 도입하며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돈 선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어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선거 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선거 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룬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매 2년마다 민주주의지수를 측정하여 평가하여 발표 하고 있습니다.

165개국과 2개 자치령을 대상으로 5개 항목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2008년도에 10점 만점에 8.1로 28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대상 국가를 4개의 범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흠 있는 민주주의 국가, 민주와 독재 혼합 국가, 독재 정권, 이렇게 분류하는데 대한민국은 2006년도에는 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속했지만 2008년도에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속했고, 특히 선거 과정과 다원성 분야 평가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세계 10위권의 평가를받았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 앞서는 점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과정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

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 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선거 과정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부터 매 선거 시마다 15개국 정도의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신생 독립 국가나 저개발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선거 과정 전 과정 을 참관을 하고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나 기법, 장비 등에 대한 연수를 받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유엔의 요청으로 이라크 독립선거위원회에 대한 위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또한 2008년도부터 유엔개발기구의 지원으로 캄 보디아의 선거 관계자 연수를 세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거 운동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 너무 지나치 게 포괄적이고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국민들의 정치 참여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개선된 선거 문화와 성숙된 국민 의식 들을 고려해서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선거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 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 대되어 왔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10월 15일 재 외선거 및 선상부재자투표 도입과 선거 운동의 자유 확대, 정책 선거 풍토 조성, 유권자의 알권 리 신장, 현실적인 규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 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올해 다시 내년 5회 동시지방선거가 교육위원 · 교육감 선거 를 포함해서 선거까지 8개로 치러지기 때문에 하 자 없이 관리하도록 절차에 관한 사무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고, 선거에 관한 일상적인 규제를 보 다 완화하며, 선거 운동의 자유를 더 확대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보궐 선거에서 사전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 견을 추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정 의견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7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 선 의견입니다.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 하는 의 견이 많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 는 한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살려 정당이 선거 운동의 목적 없이 자당 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 한 활동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는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 다.

이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에 들어가 면, 정당의 명칭이 나타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 게 한 것으로 보고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를 선거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자 유롭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기부 행위 제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 의견입니 다.

2004년도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기부 행위를 상시 제한하면서부터 그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하 다, 과도한 규제라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 왔 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선거의 불공정이나 고비용이 따 라가지 않는 한 이것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해서 당원 교육 이라든지 당원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고, 의례적인 행위와 관 련해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 저서를 주는 행위라든지, 의정활동보고 회, 토론회 등의 행사에 참석한 자에게 현재는 커피 등 음료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음료 정도는 주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위기라든지 재난 등이 있을 때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그 행위 자체는 허용을 하자. 지 금 현재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할 수 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 우에도, 플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예상되는 법령 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 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자 치단체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를 완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의 일상적인 인쇄물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현재 사 전 선거 운동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물 역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180일 전

부터 들어가면 다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 인쇄물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명칭만 들어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한 인쇄물로 보고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내용도 복잡하고 정당 후보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지나치게 규제가 심하여 표 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통상 적, 일상적인 인쇄물은 설사 정당의 명칭이나 입 후보 예정자의 성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이를 확대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대통령 선거 기간에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가 허용되고 기타 선거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선거에 영향을미치는 집회가 아니라면 전면적으로 허용하고자하였습니다.

선거 운동의 자유 확대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82쪽입니다.

앞서서 교수님들의 공술에서도 나타났지만 인 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상시 허용하고자 하 였습니다.

현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만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 습니다. 심지어 정당마저도 지금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닐 때에는.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 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게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언제든지 학력, 경력 등이 게재 된 명함을 선거 구민에게 직접 주는 경우에 항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연설원, 사회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연설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연설, 대담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거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선거 분위기 가 너무 차갑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축제 적인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거사무원 등은 싼값의 표찰이나 수기, 마스코트 등 소품을 활용함으로써 좀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허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선거 운동 의 규제를 좀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정한 기간에 한해서 언론 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언론사는 언제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문 광고 등에 한 과도한 규제를 전부 다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보도 심 의기구를 모든 선거에 설치하고 그 운영 기간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비방,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대상 범죄의 범위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추가하 였습니다. 현재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현재 거소투 표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대리투표 등 투 표 부정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보궐 선거에서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유권자의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 안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유권자의 투표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제의 심각한 위기 를 걱정하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일 전에 투표를 하려는 선거 인이 별도의 신고나 절차 없이 현행 부재자 신고 처럼 특별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설치한 투표소에 가서 선거일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입 니다. 이를 통해서 투표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투표율을 또한 제고하기 위하여 투표 참여 인 센티브제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투표참여 확인증제도를 실시해서 국공립 유료 시설의 입장 료를 면제하거나 할인받도록 하였습니다만 그 대 상 시설 수가 한 1500개밖에 되지 않고 그 효과 가 매우 약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유료 강좌의 수강료라든지 보건소의 진료비, 각종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투표참여확인증을 가지고 가면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투표참여확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6월 2일 동시지방선거는 8개 동시지방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 거 절차 사무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 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인물로 대체 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위반 상태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드 팩스(sealed fax)를 이용하는 선상투표 도입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해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를 부과해 책임원칙 에 위반, 부합하지 않고 지금 상한선이 5000만 원입니다. 이 5000만 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해 서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사는 해 놓고 과태료 부과만을 유예하고 있고, 그러한 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법적 안정상태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법 개 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지방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될 때 그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전부 터 궐원이 생길 때 후순위자가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이 시급합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무 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 다는 한정위헌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역 시 개정이 필요하고요.

인구편차가 4 대 1이 넘어서 현재 지역구 시· 도의원, 지역구 별표에 대해서 투표가치평등성 위반으로 역시 헌재가 위헌판결을 한 부분이 있 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광역의원, 시·도의원 선거구가 사실상 없는 셈이고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4대 1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는 광역의원 선거구가 먼저 정해져야 또 따라서 정할 수 있는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 기탁금액이 5억 원, 과도하다는 취지로 역시 금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현재 헌재가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헌재 판결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헌법 개정논의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투표법이 89년 전문 개 정된 후에 전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상으로는, 이 법만 가지고는 현재 설사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투 표법 개정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개정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내년 6월 2일 지방 선거가 불과 7,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들이 8개 동시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또 출마 가 되는 후보자들한테 충분한 출마의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 겠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신속하게 이를 다루어주실 것을 선거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예, 조해주 선거실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으로 여섯 분 공술인분들의 공술

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12시 가까이 되어 가지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듣고 그다음에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질의시간은 7분이 되겠습니다. 이 질의는 첫 번째 질의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질의순서가 다 이행된 뒤에 5분 동안 시간이 허용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공술인을 지정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나라당의 이경재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예, 이경재 위원입니다.

자, 이연주 진술인요. 다른 분들은 전부 지방선 거에 있어서 공천제 비판은 많이 했지만 결국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연주 공술인께서 는 반대하는 논리를 전개하셨습니다.

뭐 이론적인 것을 저도 빼놓고 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구당위원장, 협의회장이 단독으로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인천시당위원회의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는 여성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하여튼 16명 정도의 의원들이 공천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거기에 지구당위원장의 의견도 많이 참작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막판에 아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지역에서 경선을 붙이든가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지구당…… 국회의원이나 또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거기에 정치적 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비리가 돼서 발견된 게 얼마인지 저는 상상이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부 돈 받고 해 준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그렇게 결정된다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듣기에는 '아 그러니까야, 이것 각자 하도록 하자'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국회의원도 처음에 나올 때

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지도가 별로 안 나오는데 지역에서, 특히 도시지역에서 구의 원, 시의원 하면 인지도가 0.5% 이상 넘는 게 없 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을 거르는 작업이 이것 공천 아니고는 어렵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 리고요.

제가 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의 진출이 방해가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마도 각 정당이 가급적 여성을 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각계로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여성의 당선율이나 진출은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래도 정당공천을 통해서 가는 것이, 비례대표는 일단 우선은 1번으로 여 성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여성을 늘리려는 게 정당의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 에서, 이렇게 정당공천이 여성을 배제하는가 하 는 논리가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에 일본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기성…… 기 득권의 국회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성 중에 서 인기 있는 여성들을 많이 공천해서 이겼거든 요. 정당은 어디까지나 많이 이기는 것이 우선입 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쟁력을 갖추면 누구보다도 같은 값이면 여성으로 하려는 게 정당인데 왜 개별 적으로 출마하는 것이 여성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진술인 이연주** 제가 답변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조 예, 그렇습니다.

○진술인 이연주 예, 이경재 위원님 같은 분만 계시면 저희가 이런 폐지운동을 할 이유가 없습 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당공천 폐지운동 을 하는 국민운동본부에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참 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유권자연맹에서도 참여하게 되기 이 전부터 작년에 전국지부에서 회원들의 소리들을 다 담아낸 것이, 지방선거 기초에서 특히 정당공 천의 폐지를 해야 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저희 전 국 회원들이 그것을 다 제시했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이 운동을 하기로 실시했는데 운 동본부가 마침 생겨서 저희가 같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말씀 중에 세 가지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천과정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공정하게 하신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지금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공천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당원, 대의원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당원과 대의원들이 정말 진성당원, 회비를 내는 그런 당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그 공천과정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몇 군데에서 일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후보가 나왔을 때는 그 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진술인 이연주 그리고 두 번째 비리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면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그동안 언론 매체나 신문 지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례들이 좀 보도가 되었고 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된 각 종 토론회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추후에 이경재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 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경재 위원님은 정 말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친여성적인 의원님으로 저희 단체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경재 위원 감사합니다.

○진술인 이연주 아니오, 여성유권자연맹······ 이전에 자문위원도 역임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성이 이 정당공천제에 의해서 더 제한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로 답 을 드리겠습니다.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지 않은 2002년도의 여성 당선비율이 3.7%였습니다. 2006년도에 여성 당선비율이 13.7%입니다. 10% 늘었습니다. 그 10%는비례대표 10%를 1번을 여성에게 줬기 때문에 10%가 늘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서 여성이 더 많이 당선됐더라면 13.7%가 아니라 10% 플러스 더 됐었어야 되는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상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을 통해서 여성들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비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에 서, 여성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았습니다. 수치로 지금 제가 일단은 먼저 말씀 을 드립니다.

○이경재 위원 시간이 답변을 다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못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위원장 김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양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위원** 민주당 천안 갑 양승조 위원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이연주 대표자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방의회라든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사람이거든요. 법안 낸 사람인데, 정당공천제 폐지했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정당공천 했을 때는 정당 내부에서 나름대로 후보자를 검증하거든요. 또 아까 이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 방적으로 지역위원장이 공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최소한 몇 개 정당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를 구하고 도당 내지 광역시당 차원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공심위에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역위원장님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지역위원장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될리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공심위에서 선정할 때 나름대로 후보자를 검증해서 당에 있어서 득표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공천하는 경우가 많지요.

참신성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같은 조건이면 여성이라든가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정당공천이 지난번에 기초의회 의원까지 확대되지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천안인데 지난…… 지금 현재 기초의회 의원들하고 전 의원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저는 아주 결단코 현재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백번 자질이 우수하다 또 시장에 대한 견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판단하는데 그 가장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정당공천으로 일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 정당공천이 안 됐을 때는, 제가 결코 건설업 그 부분 전체를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해서 갑자기 돈을 벌

었다든지 그런 분들이 기초의회 의원들로 참여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통계는 안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초의원들 정당공천을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학력으로 볼 때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많은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면 정당공천이 안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지역 토호들의 발호 또 돈 정치, 돈 선거, 그런 폐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게 좀 해결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나름대로 군 단위 가면 기초의회 의원들이 7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또 군에서는 그 단체장님하고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아주 강하거든요.

또 연배로 봐도 단체장님의 연세가 대략 10살 정도 위이신 경우가 많지요. 이런 상태에서 정당 공천이 안 됐을 때 과연 우리가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겠느냐 이 두 점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이연주** 양 위원님께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의하신다니까 굉장히 기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폐지 주장하는 사람을 저 혼자 앉혀 놓으셔 가지고 모든 질문을 다받게 만드셔서 갑자기 위원장님이 원망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정당공천제를 무조건 폐지하자는 의견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후보자 검증과후보자 날림 문제와 그다음에 책임정치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검증 시스템이만들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까 제가 제의한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일반 주민이나 시민단체나 그 지역의 정당대표—여야든 간에—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하는 후보검증할 수 있는 기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좋겠다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선관위가 지난번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것의 일환처럼 그렇게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그 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기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후보를 검증하고 공천하는 과 정이 공정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대다수 의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정당 당직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만나 뵈었을 때 이 제도에 있어서 취하시는 입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입장보다는 이 제도가 있음으로써 지금 지역정당으로 갈려져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정당이 그나마 기반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시는 답변을 제가 들 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양승조 위원 하여튼 주민공천제의 바람직한 의견 제시를 했는데요. 과연 주민공천제에서 바람직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구성될지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한 3만 정도도 안 되는 자치단체도 많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해주 실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투표율 하락이 굉장히 문 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조해주 예.

○양승조 위원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실 50% 정도도 투표를 안 한다는 것은 대표성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투표 참가자 분들한 테,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자체에서는 일부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요, 상품권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먼 곳에서 사실 차를 타고 막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농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투표 참가자한테 상품권 부여 내지 일정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술인 조해주 투표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상품권 부여나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전체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교통편의 부분은 지금도 정당 후보자들 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교통편의는 작년 선 거법 개정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예산 문제라면 우리가 한 3800만 명 정도가 투표해서 한 70%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3000만 명 정도가 잘 안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302조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민주정치의 정착이라든가 대표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0초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충조 그렇게 하십시오.
- ○양승조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태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교수님,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 필 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취지는 충분 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생활 정치거든요. 밀착형 생활 정치이고, 전체적 인 법률이라든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중앙 당, 중앙 정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강원도라든가 충남의 군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서울시 반 이상 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보다 넓은 곳도 많지요, 인구는 몇명 안 되지만. 그러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생활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말이야?

예를 들어서 현재도 그렇거든요.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 4명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기초의회. 그분들도 4명이면…… 8개 읍·면에서 4명을 뽑는데 그분들만 해도 너무 범위가 넓고 지역주민들이 생활 정치의 장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위원회를 찾아갈지도 모르고 또 찾아가면 4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다른 것과 관련되지만 그랬을 때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주민과의 밀착형 생활 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태**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한 부분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면적인 비례제를 이야기했던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의 전반적인 구조에 있어서 지역 대표성, 말씀하셨던 부분이지요,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도시지역과 달리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

에 있어서는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점인데 지금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생활 정치를 구현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수준의 기초단체 규모를 고려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 드렸던 생활 정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비례대표로 하건 현재의 구조를 갖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승조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위원장 김충조**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나라당의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저희 당 선진화특위에서 논의 하던 내용들이 많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짚어 주셔서 공감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손혁재 교수님이 중선거구제를 특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초의원 2~4인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그 역사성이 당시에의원 수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현실적 필요, 그런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읍·면·동을 막 통폐합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묶어서 예컨대 전같으면 네 사람이 뽑힐 수 있는 자리면 한 사람줄여서 세 사람 뽑기로 하고 이런 식의 선거구를통합해서 숫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첫째로 한가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더니, 저희 지역의 예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생색이 나는 일은 서로 자기가 했다고 그리고 좀 골치 아픈 민원은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책임성의 문제가 굉장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선거구제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크게 이념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큰 정책들도 결정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 는 일들의 방향을 잘 듣고 특히 민원을 해결해 주는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성을 갖고 있다, 저는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손혁재 교수님께서 혹시 이 중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가져가 기 위해서 이것을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려 버리 면 거기에 대해서 역행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갖고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잘 모 르겠습니다.

배경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 손혁재 그런 방향성은 아닌 거고요.

사실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도 말하자면 광역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초의원을 또다시 이렇게 너무 세분해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얘기지……

○정진섭 위원 그 말씀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성호 교수님께서 추가로 하신 말씀 중에 대개 다 공감하는데 추가하신 말씀 중에 지 구당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공 천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 희 한나라당은 '오세훈 선거법'을 주도한 당입니 다. 저희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해 왔고 아주 금과옥조같이 지금 지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당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오세훈 선거법' 체제에서 후퇴하는, 다시 말하면 정치 개혁이 후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의 생각은…… 그렇게보시지는 않습니까?

○진술인 임성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정치 개혁으로 생각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후에 진행된 상황을 볼 때는 지구당을 폐지한 것이 기대했던 순기능을 저는 그리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인위적으로 지구당을 억제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당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지구당도 꼭 부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 구당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까지 법으로 억 누르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의를 제기하 고 싶습니다.

○정진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연주 대표님한테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워낙 소수의견을 내셔서 또 그렇 게 질문이 집중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첫째로 말씀을 죽 듣는 가운데 물론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정당이 나쁘다' 이렇게 낙인찍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생각은 하겠지만 과연 우리 정치가 그렇게 욕먹고 해야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편성을 갖고 좀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경기도의 공천을 담당하면서 한 600명 정도 공천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중에서 세 사람이 지구당 위원장과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비리고 그 정당은 비리 정당입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성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한두 개 사례를 갖고 전체를 낙인찍기 하시는 듯한 말씀은 저희들이 듣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저희들의 인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다 걱정하는 바가 뭐냐 하면 기초 의원들의 경우에 인지도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검증해 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검증을 정당이 한다 그러면 정당은 우리 국가 전체에 걸친 스탠더드를 가지고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어떤 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안 되고, 예컨대 음주운전은 몇 년에 걸쳐서 몇 번 한 사람은 안 되고, 아주 자질구레한 문제까지 다 해서 우선 모든 문제를 떠나서 그런 데 해당되는 사람은 다 탈락을 시켰 습니다. 검증 방법 중의 하나였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또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에서 검증을 하면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검증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이 사후적 책임을 집니다, 표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검증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진술인 이연주** 그러면 정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공천 비리로 인해서 지난번에,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단체장 여섯

곳이 보궐선거를……

○정진섭 위원 대구에 우리가 출마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진술인 이연주** 그런 경우에 출마시킨 지역도 있으셨지요?

○정진섭 위원 있지요.

○**진술인 이연주** 그런데 그런……

○정진섭 위원 그러나 출마시키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진술인 이연주** 아니, 지금 특정 한나라당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당들 에게 지금 다 해당되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경우에 그 지역에서 후보를 냈던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 연 정당들이 책임 정치를 주장하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책임을 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진섭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풀 때 그런 문 제가 있는 지역에는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것 을 법제화하는 그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지 공천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이 방법은 아니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술인 이연주**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 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계신 지역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이 지금 다수가 있다는 말씀입 니다.

○정진섭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예, 쓰십시오.

○정진섭 위원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서 여성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자라는 말씀은 저희도 원 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천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일단 검증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당 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지 당선 가능 성이 없는 사람을 공천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이 여러 명 있으면 그중 에서 당에 대한 기여도가 좋은 사람을 선택한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뿐이면 당에 대한 기여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을 공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당의 생리 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적기 때

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비례대표 1 번에 다 넣어 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을 무조건 50% 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평 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평등의 원칙에 굉장히 반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별의 평 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헌법적 가치를 지켜 주기 위해서 예외적이고 보완적으로 여성 할당제 를 하는 것이지 50%를 여성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연주** 그 헌법 정신은 해석하기 나름 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헌법에 의하면 평등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할당제가 살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 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를 드는데 외국의 사례는 너무나 예를 들 것이 많습니다. 지금 시간제한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여성들과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대한민국 여 성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여성의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그것은……

○정진섭 위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성…… 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지요.

○**진술인 이연주** 아니요, 당에서 그런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 구성원 속의 다수가 남성이기 때 문입니다.

오늘 이 정개특위도 보십시오. 20명 위원 중에 여성이 한 분 계시는데 이 한 분조차도 지금 이 자리에 자리를 지키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개특위 위원을, 인원을 결정하는 것도 정당에 서 남성들에 의해서 정해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 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성이 경쟁력이 떨어지지 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9.7

○정진섭 위원 후보를 공천함에 있어서 다 여론 조사를 해 보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경쟁력을 말 씀드리는 것이지……

○**진술인 이연주**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여성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져도 양성 평등 정치 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수준까지 여성 들에게 그런 할당제도를 부여하는 것이 선진 국....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할당을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 여성에게 할당해 드리는 비례대표조차도 없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좀 모순적인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지요.

○진술인 이연주 아니, 그렇게 본다면 여성은 늘 비례로밖에는, 비례제도에 의한 혜택밖에는 볼 수 없는 차원이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출마할 여성들 중의 상당수가…… 저희는 그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지역의 공천을 하려고 해도 '여성은 비례가 있으니까'라는 그 명목하에 늘 순위에서 밀렸기때문입니다.

○정진섭 위원 아니, 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우리가 경기도의원 100명 정도를 공천하는데 지역의 여성 열네 분을 공천을 지난번에 한나라당이 해서 100% 다 당선을 시켰습니다. 경쟁력 있는 여성이 만약에 20명 있었고 30명 있었다고 하면 여론조사에서 그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의원들이 계시면 저희는 30%까지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네 분을 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 웠다는 것이 현실이지,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 하시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 이연주 아니요, 현실이 그렇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 여성계가 이대로 그 의견을 지금 수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여론조사로, 어떤 근 거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진섭 위원 A선거구에서, 그러면 그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 중에서 우리 당, 예 컨대 한나라당의 당적을 갖고 계신 여성분이 계 신데 그분이 여론조사상 당선이 된다라고 나오면 저희들은 군말 없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을 합니다.

○진술인 이연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한나라 당이나 민주당에 소속된 여성 중에서 찾기 때문에 여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구조 자체가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여성 숫자가 적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성들이 더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정당공천제라는

제도 때문에 막혀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섭 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여성 후보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우선적으로 공천할 것입니다, 당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은 일단 통과해야되고,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만 있으면 여성에게 최우선권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어플라이(apply)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 다.

○**진술인 이연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늘 그렇 게······

○**위원장 김충조** 위원장이……

○진술인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위원장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활발히 토론이 진행되고 있을 때 시간 때문에, 한편에서 보면 '회의 진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진술인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이렇게 하면 듣기 좋지요?

○**진술인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술인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이 대목에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 공청회를 예정했던 게 7월 21, 22,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시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서 자동 무산이 됐고 그 뒤에 오늘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강단에 계시는 교수분들 2학기 강의가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술해 줄 교수님들 모시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방침은 기초선거에 있어서의 찬반 공술인을 각 교섭단체가 협의해 가지고,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 이 교섭단체들이 협의해서 균등하게 공술인에 주도록 하자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술인 교수분들을 모시기가 참 어려워 가지고 우리이연주 회장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일부러 그

런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 을 깊이 성찰하고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 다.

○**진술인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예.

한 분 위원 질의만 더 듣고……

○**진술인 손혁재** 위원장님, 잠깐 그전에 구상찬 위원께서 저한테 서면질의해 주신 게 있는데 아 까 정진섭 위원님 답변 때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잘라먹을까 봐 말씀 못 드렸는데 간단히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충조 아, 오후이면 안 되겠습니까? ○진술인 손혁재 아니, 제가 발언을 한 김에 이 것을……

○위원장 김충조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진술인 손혁재 구상찬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 신 질의는 팩시밀리를 이용한 선상투표제의 문제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개투표를 방지하고 본인을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시면서 구체적 얘기를 해 달라 고 하셨는데 사실은 선상투표제, 선상부재자 투 표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이고 요.

그다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이 공개투표를 방지하는 문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고 민인데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 보니까 일본에서 실드 팩스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없이 진 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실드 팩스라고 하 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개발이 가능하다면 선상부재자 투표를 다 실시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구상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충조 예, 감사합니다.

오전분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서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위원** 전남 순천의 민주당 서갑원 위원 입니다.

바쁜 시간 내 주셔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우리 공술인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 리겠습니다.

몇 분 공술위원들께서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중 · 대선거구제의 불합리성을 말씀하시면서 소선 거구제를 주장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조진만 교 수님께서도 옳지 않다 또 맞지 않다 이렇게 단정

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개 나라들까지 드셨 는데 제 바람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제도에 대 해서 합리적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실정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도 있겠지만 그 나라가, 선진국의 제도는 옳고 약소국가들 또 후진국, 이른바 경제적으로 후진 국가들이 이 제도는 다 합리적이지 않다,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은 조금 국민들에게 오 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우리 국 민들의 많은 노력 끝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많은 개혁을 이루었고 민주주의를 이룬 몇 안 되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에서 몇 안 되는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정치적으로, 좀 전에도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논란 속에서 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만, 또 공술인들 발 표 속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정치는 국민 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 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많은 이유가 있으나 현 재로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결국 극심한 지 역 대결 구도에 의해서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 고, 진보정당, 보수정당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국 가정책들 또 국민의 논의 속에서 서로 올바르게 제대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논의를 진행시 킬 수 없을 만큼의 정당구조를 현재 우리는, 대 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지역구도의 폐해 때문이라고 생각 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구도의 폐해를, 우리가 군 사독재정권 시절에 가장 첫 번째 과제는 민주화 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주화를 이룬 지금 현재 과정에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1차적 과 제가 뭐겠느냐? 결국 지역구도의 타파거든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그것이 결국 정치개혁 의 핵심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민주화 과정에서 소선거구 제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치개혁 의 과제가 지역구도의 타파라면 지역구도를 타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 299명입니다. 비례대 표가 54명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 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혼합형 중ㆍ대선거 구제를 말씀하셨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말씀하 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오던 바지요.

결국 아까 우리 정진섭 위원님께서 중·대선거구제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결국 의원 숫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 299석에서 좀더 늘리는 것을, 한 50석 이상 늘리는 것을 허용해 준다고 하면그냥 현행 제도대로 가도 괜찮겠지요.

그러면 최소한 2 대 1 정도,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2 대 1 정도의 구성비를 맞출 수 있으면 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우리 김영태 교수님 얼마 전에 내놓았던 모의실험 결과, 16대지요, 16대 모의실험 결과 내놓으셨고 최근에 강원택 교수께서 17대…… 아, 김교수님이 17대고 강원택 교수께서 18대 선거를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했을 때 모형을 보면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2 대 1 정도의 구성비를 이뤘을 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과연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 동의를 해 줄 것인지? 저는 쉽지 않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가 됐든 비례대표가 됐든 결국 현재보다는 비례대표 수를 확 늘려 줘야됩니다, 2 대 1 정도 되려면.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하거든요.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어떻게 국회의원 수를 더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 교수님께서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의원도 그렇고 광역의원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공천 과정에서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천 당 시만이 아니고 저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지방선거 준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선거는 제가, 다른 준비는 하지 않고 제가 순천입니다만 순천에서 어떻게 해서 여성의원들을 좀 늘려볼 수 있을까 해서 우리 이 회장님 고민하신 것처럼 정당내에서만 찾은 게 아니고 정당 안팎을 다 통틀어서 많은 분들을 제가 사실 만나고 또 부탁도 하고 추천도 해 주라고 이러기도 하고 구체적으로제가 개인들을 만나서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지역구 공천에는 그렇게 원활치를 못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게 어렵게 딱 한 사람 제가 공 천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저는 대안으로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현재 비례대표제가 10% 정도 됩니 다. 10.4%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순천 같은 경우는 비교적, 27만 인구고 의원 수가 23명입니다마는 수가 많아서 비례대표가 3명입니다. 그러나 아까 군 단위도 있고 시 단위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적은 데는 1~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처럼 비례대표를 한 20%, 국회의원 수준에 맞춰 주면, 20% 정도 늘려 주면 아마 거의 모든 지역에서 1명씩은 다 더 늘어나게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성들도 그렇고 또 여성의원들도 좀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명 뽑는 데서는 3명이 될 것이고, 대체적으로 2명이 많이 지금 비례대표가 뽑힐 거거든요, 3명이 되고 또 1명 되는 데는 2명 되고 3명 되는 데는 4명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늘어나게 되고 또 능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장애인들이라든지 소외된 특정 계층들 또 직역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에 맞춰 보면 여성뿐만 아니고 그런분야에서도 진출을 해서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례대표를 지역구에서도 늘릴 필요가 있겠다, 가능하다면 역시 기초의회에서도 국회의원처럼 2 대 1 정도 하면 제일 좋겠다고 저는, 기초든 광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조해주 실장님이 나 아니면 이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 까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구당 문제입니다. 선거제도의 또 돈 안 쓰는 선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구당 폐지가 나 왔고 또 역시 그 역으로 가장 돈 먹는 하마라고 해서 지구당을 다들 폐지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정당정치에서 과연 가장 기초단위인, 풀뿌리 단위인 지구당이 폐지되는 게 맞냐? 정당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냐라는 논란도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당의 부활 문제 는 계속 정치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또 심지어 실지로는 정당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변 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에서는 어떻 게 고민하고 있는지 조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조** 지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서갑원 위원 예.
- **○위원장 김충조** 지금 들으셔?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서갑원 위원** 짧게짧게 해서 마무리……
- ○위원장 김충조 예.
- ○**진술인 조진만** 서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 다.

일단 제가 중 · 대선거구 반대한 이유는 그 선 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더 좋은 선거제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 니다.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와 유사한 제도들이 있는데 그리고 검증한 제도 들이 있는데 왜 너무 특수한 상황, 한국적인 상 황,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선거제도가 당초 추구해야 될 목적을 왜곡하느냐는 거지요. 더 좋 은 제도, 가급적이면 좋은 제도, 검증받은 제도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주의 타파, 제도적으로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인 2표 지금 병립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독일 형식으로 연동제를 하면 비례성이 높아질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지역주의가 없는 지역에서의 비례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 다.

단 지역주의가 있는 곳에서는 제 발표문에서는 없었지만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 동제가 갖고 있는 의석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정당투표를 통해서 전체 의석이 결정되는 겁니다, 권역별의.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호남이나 영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 지역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이 전 의석을 가졌으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유 권자들이 많은 집단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100% 정당투 표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국구로 배분이 되고 그러니까 정당투 표에서는 아, 내가 민노당도 좋아하고 한나라당 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찍어 주지만 오히려 그 런 구조가 되면 100%를 찍어 주면 지역구에서도

100% 먹고 비례대표도 100% 먹을 수 있는 겁니

그런 유인이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거 제도로서는 하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최소한 그냥 현실적인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어렵고 그러니 까 할 수 있는 방법은 1인 2표제 내에서의 비례 대표를 늘리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쉬우면서도 현실적이다. 그런데 서갑원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그러면 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 의원 수를 줄 여야지 비례대표 비율이 맞춰지지 전반적인 정치 불신을 고려할 때 의원 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해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 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학자이니까 이상 적으로 생각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중에서 누가 지역구 포기하시겠습니까? 선거구 획정 조금만 해도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비례대표를…… 꼭 지역구 국회 의원들을 줄일 필요가 왜 있습니까? 왜냐하면 학 자들이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해야 되는 유권자 수, 대 표성의 문제지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 주국가 중에서 저희보다 높은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좌 기구라든지 지원 체제가 잘 되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명, 60만 명이 돼도 의원 1명이 보좌관들 데리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했 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해 가야 되지 요. 의원정수를 비용보다는 선거제도를 잘하고 정치 개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도 해야 되고 전 체적인 의회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 에서 오히려 접근하는 게, 그리고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국민들로부터 설득을 받는 게 훨씬 더 바 람직하고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술인 이연주**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양 위원님, 서 위원님, 모든 위원님 들께서 공천에 정말 너무 심혈을 기울이시고 다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서 위원님께서 여성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4년 전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 졌습니다. 여성들의 의식도 달라졌고 국민의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4년 사이에 우리가 여자 대통령 후보도 나왔고 여성 총리도 나온 이런 시점이어서 4년 전보다 지금은 정말 괜찮은 자질을 갖춘 여성 후보를 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비례대표를 늘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4년 전에 정개특위 열릴 때 제가 저 방청석에 앉아 여성단체 대표들끼리 저희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10%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가 되어 봤자 1번 여성, 2 번 남성이면 여성 비율이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 습니다. 여성 비율이 늘어나려면 비례가 30%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번 정개특위에서 비례 여 성 10%를 30%까지 늘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 지금이라도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찬성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오히려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조해주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서갑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지금 고육책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부분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300 대 180, 독일은 1 대 1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능만 하다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 부분이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를 줄여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룰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례대표를 늘려서 그런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 다.

지구당 문제는 내일 다시 또 정당법·정치자금 법 공청회가 있고 정당법을 다룰 때 다룰 부분입 니다.

지구당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 조직이고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당원협의회가 지구당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데 일단 정당정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종전에 지구당을 두었을 때 생겼던 부작용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것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 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본 회의 이후에 정회 시간을 가졌다가 다 시 오후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공술인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강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시·도의원 정수와 관련해 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 시·도의원 정수 문제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법을하나 낼 때는 기준점을 자치구·시·군마다 2인으로 하고 100 분의 42 이하일 때 1인 그다음에 100 분의 168—그러니까 4 대 1로 맞춘다고 할때—100 분의 168~100 분의 252까지 1인 추가해서 정수를 맞춰 봤더니 전국의 군 단위에서 1명인 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동료 위원님들도 고민이고 지금 지방의회에 뜻을 두고 계신 많은 분들도 고 민이던데 군에 1명일 수 있는 것이냐, 또 어느 시는 5명까지 이렇게, 현행은 다 2명으로 일괄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은 모든 시·군 단위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인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로 하자 이러니까 전국 광역의원이 한 170명이 늘어나게 되더만요.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지 이렇게 늘릴 것인데 이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국민적 합의 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 손혁재 교수님 안 계십니까? 마침 안 계시네요.

그러면 김영태 교수님이 그 점과 관련해서 말 씀을 해 주시고 더불어 지금 기초의원의 중선거 구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 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지금 2인 선거구제가 610군데, 3인이 379, 4인이 39 이렇게 돼 있는데 2005년에 저도 정개특위원이었는데 그때 2~4인으로 할 때 는 가능하면 4인이 돼서 중 · 대선거구제 개념을 좀 가져 봤으면 좋겠다, 오늘 손혁재 교수님은 5 인까지도 늘려야 된다 이러시던데 그래서 2~4인 이라고 말은 했지만 4인 쪽으로 맞춰야 된다 이 런 취지가 당시 입법 취지였던 것 같은데 지방자 치단체에서 조례로 2~4인 속에 몇 인으로 할 것 인가를 하다 보니까 거의 2인으로 나눠 놓다 보 니까 2인이 610군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의 취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될 바에는 소선거구제가 갖는 긍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니 냐라는 의견이 사실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 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김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ㆍ도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 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편차를 고려했을 때, 결국 인 구 편차를 고려한다는 것은 투표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필요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저는 그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서 의원 정수는 늘리는 게 좀더 바람 직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역대 지방선거 과 정에 의원 정수가 늘기도 하고 줄었던 적도 있습 니다.

특히 최근에는 줄이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었는 데 거기의 기본적인 논거는 정치가 대단히 비효 율적이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더 비효율적이 기 때문에 능력 있는, 정말 할 사람만 뽑아서 하 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었는데 실제로 소수를 뽑 는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전문성이 있고 또 정치적 효율이 살려 졌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

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대 표성이라는 측면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대표 성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 금의 의원 정수는 사실 조금 적은 편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강기정 위원 광역 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김영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늘리 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바람 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아 까 말씀하셨던 기본 입법 취지는 4, 5인 정도로 늘리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거의 2 인 선거구 중심으로 짜여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법취지가 살려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그 점을 상당히 문제였다라고 앞서 비판 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 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부분들의 의미들이 또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선거구제로 해서 4, 5인으로 법에서 못을 박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기초의원 같은 경우 크기가 좀 차별이 있기는 합 니다만 7인, 8인 되는 10인 이하인 선거구도 대 단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중선거구를 해서 5인을 뽑는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2개 선거구에서 다 뽑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비례 제와 거의 큰 차이가 없어지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만 오히려 소선거구제를 일정 정도 유지하더라도 비례제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중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 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만 그런 측면 때문에 오히려 비례제를 훨씬 늘리 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기정 위원 제 지역구의 예를 들면 2개의 선 거구에서 각각 4명을 뽑아서 8명이 의회를 구성

하거든요, 갑 지역, 을 지역. 제가 광주 북구인데 요. 그런데 4명씩 뽑다 보니까 행정력의 낭비를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4명이 똑같이, 현 실적인 이야기인데 한 분의 구의회 의원님이 어 떤 지역일을 하면 다른 분도 똑같이 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고 차별 당하기 때문 에 그래서 행정력이 많이 낭비된다, 행정의 재화가 많이 낭비된다 이런 지적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반드시 돌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영태** 지금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가 기본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선거구 단위의 지역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비례대표의 형태로 해서 지역대표성 이외 에 해당 선거구 이외의 전체적인 이해관계를 대 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가운데 어느 부분들을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선거구제로 돌아간 다라고 한다면 지역대표성이 강화되는 부분에 있 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있음 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정당정치에 있어서 야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소선거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 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선거구로 돌아가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기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지역에서 지역주의 발호 때문에 지방의회가 완전히 독점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또 영남에서 특정 정당에 독점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제의 견제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돼서 이런 특정지역에 의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도 많이 부정 당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는 각각 지역주의가 존재하더라도 견제와 균형이—18대는 조금 빗나가고 왜곡되어 있습니다마는—어떻든 존재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선거구제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2~4인 선거구를 통해서 극복해 보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진술인 김영태 예.

○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통계표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정당공천 폐지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그 기능은, 지방의회 독

점 현상은 깨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연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아까 제가 주 장한 것은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지역에서 한 정당에서 후보가 다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당에서 공천심 사를 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에 의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천을 할 경우에는 정당과 상관없이 인물중심 정책중심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데요.

더 이상 선거구제와 관련된 자세한 답변은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더 깊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기정 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장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겠 습니다.

○張倫碩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어느 분한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 경축사 등과 관련해서 일 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 니다.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정 치 선진화를 위해서 '깨끗한 정치 생산적 정치를 구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제도도 개 편을 하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중앙 국정에 몰 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제의 했다는 것으로 좀 잘못 보도가 된 적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소선거구 제와 중선거구제 또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 대표제 이 콤비네이션도 검토해 볼 만하다 하고 얘기를 해서 선거구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 는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대선거 구, 뭐 대선거구는 아니겠지요? 중선거구를 국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대체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 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화두가 된 게 지

역주의 해소입니다.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 지역 주의가 우리 정치 또 우리 사회의 정말 극복하고 청산하고 해소돼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접 근을 하더라도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못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선거구제도,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한 다면 그것은 좀 비약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선거제도,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마는 선거제도는 거울과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의 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선거제도, 선거구제를 통 해서 투표를 통해서 지역주의가 그대로 나타나는 법이다,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거울인데 존재하는 지역주의 해소의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 거울을 예를 들면 오목거울이나 볼록거울로 고쳐서 존재 하는 지역구를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본격적 인 접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점에 관해서는 학자님들도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역주의 뭐 여기서 길게 말할 자리는 아닙니 다마는 사실은 지역주의라는 게 내각제든 또는 대통령제든 어느 나라에서 소위 중앙정부, 중앙 권력이 배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 가치, 정 책도 있고 사업도 있고 예산도 있고 특히 인사 이런 여러 가지 자원과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지 역별로 아주 균형 있게 공정하게 배분이 됐다면 사실 지역주의는 안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볼 때 '중앙권력이 집권세 력이 우리 지역에는 그런 가치 배분에 있어서 불 평등하다, 소외시켰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지역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 가 가치 배분할 수 있는 중앙권력을 장악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대통령선거—이른바 대권 이지요—대권에 지역주의가 투표 과정에 표출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국회가 요새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 고 또 국회 권력도 우리가 좀더 장악을 해야 가 치 · 자원 배분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국회의 원선거에도 소위 지역주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구제를 통해서 지역주의 문제 해소

에 노력하는 것은 또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 다면 보약처럼 쓸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은 치료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존재하는 지역주의가 옳 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차치한다면 저는 지역에 있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 또는 대체로 반영되는 선거구제라면 그게 나쁠 것이 없다, 그것이 나빠 서 뭐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가 생기게 된 것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중앙집권 권력의 가치 배분 문제에 있 어서의 문제점이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정당이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보스 중심의 소위 지역정 당이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횡행하다 보니까 정당 구조가 지역정당 구조화가 돼 버렸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정당 구조 체제를 어 떤 의미에서는 해체한다고 그럴까요. 여기에 변 화를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거구제 를 바꾼다고 해도 될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에서 지역정당주의가 그 대로 시현이 됐다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을 뽑는 선거제에서는 그 지역정당 구조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1등, 2등, 3등, 4등이 같은 당 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 들어서 저는 너무 지나치게 선거구제를 가지 고 지역주의 해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크게 바 람직한 것은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당제도의 문제, 아까 말한 대로 중앙권력의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결 국 헌법 개정의 문제가 나오고 권력 구조의 문제 가 나오고 정당 제도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선거 구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안타까 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분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말 씀드린 이런, 저는 학자가 아니고 현장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느낀 소회입니다마는 이런 견해에 관해서 조진만 교수님, 김영태 교수님…… 이연 주, 교수님은 아니시지요?

그러니까 두 분 교수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 니다.

차례대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 조진만** 장윤석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 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발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 이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 때 얘기한 것은 보도 오해가 좀 있었지만 그게 화두로 중점 적으로, 선거구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한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데 화두를 던진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싶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더 발전 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논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석 위원님 역시 선거제도로 지역주의 타파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나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적 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지역주의 문제를, 선거구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역주의 문제는 어떻게 타파해야 되느냐, 외국에서도 지역주의들이 존재하니까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지역주의도 하나의 큰 균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대통령께서 아니면 위 원님들께서 유념해 두셔야 될 게 지역주의를 타 파를 하려고 하면 샷슈나이더(Schattschneider)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균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영호남 중심의 지역 의 균열이 대한민국의 균열 중에 가장 중요한 균 열이다. 이게 지금 조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과 지방 이런 균열이 새로 생겨 가지 고 지금은 영호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 중하고 지방 간의 균열이 더 중요하다라고 만들 던지 아니면 진보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 급, 영남노동자와 호남노동자 노동자들끼리의 어 떤 계급적인 균열이 중요한 거지 지역적인 균열 이 아니다. 아니면 아까 좀 논쟁이 있었지만 성 별, 젠더(gender)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화두를 갖고 그런 균열은 전략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당위적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 들어 나가서 어느 정도 먹혀들어갈 때, 사회적으 로 먹혀들어갈 때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지역주 의가 뽑아달라고 그래도 안 되겠지요. 이해관계 가 더 큰 균열들이 생기니까요.

그런 쪽에서 보면 지금 지역주의가 비판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재생산되고 있는가, 역시 지역주의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주의, 아까 견제 독점 기능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특정 지역에서 기초의원을 특정 정당에 서 다 장악하고 있다, 독점을 하고 있다, 견제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선거구가 해결할 것이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견제보다는 독점했을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좀 인식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독점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 배분이라든지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강기정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조금 저 기 하면 선거구제 개혁 관련해 가지고 의원 정수 설정하는 그런 게 방법이 있는가 그랬는데 미국 의 경험이 약간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연방이 출현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의원정수 하겠지만, 군에 서 인구비례로 하면 1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차 피 크기는 클 수도 있고 똑같은 군인데 우리는 왜 1명이냐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큰 군에서는 인구도 많고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 든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 2명의 그 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느 군이라든지 그런 크기에 상관없이 최소한 2명은 기본으로 뽑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구비례로 의석을 배분하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합당하게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요. 글쎄요, 선거제도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타파 하겠다는 부분들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부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좀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어떤 중선거구·소선거구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비례적인 중선거구제도가 있습니다.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라고 한 3명에서 5명 정도 선호 투표해 가지고표 이양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훨씬 더 정치적 대표성도 제고되고 지역주의 부분도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선거제도 개혁적인 차원에서 접근을하자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선거구제의 개편을 통해서 지역주의 를 해소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회 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 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들이 투표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를 바꾼다라고 해서 투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는 거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히 선거구제 를 개편한다 해 가지고 지역주의가 해소될 수 있 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와 연관해서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 다만 지역주의의 해소보다 오히려 지역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바람직하다 그런 말 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취지에서 지금의 국회 의원 선거제도가 됐건 혹은 지방선거제도가 됐건 지금의 선거제도는 좀 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 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개별적으로 통계를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컨대 호남지역에서 지금의 민주당 혹은 그 이전의 민 주당과 유사했던 정당들이 받았던 지지율을 보면 높아야 70% 정도이고 낮은 경우에는 50% 이하 인-과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당됐을 때는 요-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나 라당 역시 국회의원 선거를 예를 들면 영남지역 에서 얻는 지지율은 대략 60% 정도입니다. 그런 데 실제로 영남지역에 국회의원이 배출되는 것을 보면 민심과는 다르게, 실제로 영남지역 같은 경 우 90% 이상 거의 100%에 가깝게, --간혹 무소 속이 끼지요—호남지역 역시 이런 현상은 마찬가 지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선거제도는 특정정당 이 그 지역의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을 가지고 오 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부분은 사실 지역 의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고 이 부 분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요.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 게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은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했던 표심을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 렸던 국회의원 선거, 예를 든다면 독일식의 선거 제도가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비례대표를 대폭적으로 늘려야만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두 번째,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모이다 보면 대략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호남과 같은 경우 거의 90%, 100%가 다 특 정정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의회의 경우에 는요. 단체장도 역시 같은 소속이고요. 그러면서 견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유명무실해져 있고 그 러다 보니까 지방정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정치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는 경쟁의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이 부분 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서도 역시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의 인물중심 선거에서는 사람을 보고 하다 보니까 특정정당에 의존하는, 그래서 힘 있는 거 대 정당들에게만 의존하는데 군소정당들이 의회 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례제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선거제도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정당법 역시 좀 바 뀔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법을 보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당은 서울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도당 이 5개 지역에 걸쳐서 있어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가 있고 후보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호남지역에서 시민운동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정당과 유사한 형태로 시민후보를 공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한나라당 후보를 호남 지역에서 찍어 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 나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단체랄지 다른 사회세력들이 호남 내에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 는 부분들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당법의 구조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꼭 중앙당이 서울에 있어야 되고 5개시·도에 걸쳐서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방정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시급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민주당 박선숙입니다.

일단 질의를 조금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논점이 동일선상에서 논의가 되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논의와 방금 조 교수님과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는 얼핏 보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대표님께, 여성들의 정치 진출 혹은 유권자의 뜻을 좀더 반영하는 선거제도 그런 측면에서 앞에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 혹은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이연주 저는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것하고 연장선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주의가 조장된 근본 원인이 중앙정당・광역・기초로 이어지는 1당 독점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 교수 님 말씀은 유권자의 표심이 중요하고 또 그런 의 미에서 비례제 도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 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일조할 수 있 는 방안 중의 하나가 정당공천제 폐지라고 생각 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에서 정당공천 제가 폐지된다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어느 특정정 당의 독점현상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권자의 표심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특정정당에서 그 지역에 전부 공천을 줘 버리면 유권자는 다른 것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는 그런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참여 확대방안을 위해서 비례대표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여성할당제 부분을 저희가 주장해 왔었는데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기초의회에 비례가 10% 도입되고 1번이 여성에게 할당됨으로써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의 비례대표,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10%의 비례대표제 도 입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지역구 의 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 진입 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기초의회까지 비례대표제가 확산 될 필요가 있는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근본 취지는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에게까지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가, 지역을 위해서 풀뿌리로 일할 수 있는 지역일꾼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타당한 제도라고 저는 생 각하지 않습니다.

○**박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른 결론을 내고 논점을 조금 서로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의 여지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의 답변으로서는 접점이 없 네요.

저희 민주당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여성들의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 대표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정당독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에 김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당의 형태에 대한 규정을 달리함으로써 진입의 통로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비례대표의 비율을 전체 의원들 가운데에서 조 교수님 말씀 하시는 것처럼 상당수로 확대하고 또 지역공천에 서도 여성에게 할당을 하자 이런 의견들도 검토 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의 의사를 좀더 반영하는 풀뿌리민주주 의가 실현될 것인가라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각 각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강조하기보다는 그 장점들이 내포하고 있는 단점이 또 있기 마련 이니까, 이를테면 전면적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이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독식의 우려가 있는 것, 그래서 다시 대안으 로 나온 정당에 대한 규정을 좀더 완화해 주는 그런 대안들이 부수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거 나 아니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아닌 비례대표의 상당수 확대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지금 시점에 저 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답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선관위의 조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제 도입의 취지는 참 좋은데요, 일본 이나 호주같이 사전투표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 고, 요건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사전투표제를 도 입할 경우에 그것이 불법적인 선거운동 동원에, 불법적으로 조직적인 투표의 동원수단으로 악용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를테면 투표 날 선관위의 아주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지금 일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투표장에 자기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을 모셔 가느냐에 따 라 당락이 갈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후보들이 있는 마당에 사전투표제의 경우에 선거가 이루어 지는 전 지역에 대한 감시가 충분히 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조차 엄격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지금 선관위에서는 요건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다면 말씀드린 그런 우려 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사전투표의 요건 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예.

○**박선숙 위원** 선상투표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 희가 사전에 선관위에도 여쭤 봤습니다만 조금 명료하지 않은 것이 취지는, 그분들에게도 투표 할 기회를 드려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누구나 공 감을 할 것입니다만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대상 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항선 845척, 원양어선 326척 추산으로 하면 예를 들면 팩스투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도 입한다면 한 300억 정도가 소용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 그리고 오늘 발제문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 니다만 기초의회의 경우에 매니페스토 의무를 조 금 완화하거나 면제하자라는 선관위의 의견이 있 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발제문에도 일부 기초의 회가 과연 정치적인 활동인가 아닌가에 대한 견 해 차이들이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의 생활정 치 모두가 정치의 영역에 있다고 보고 매니페스 토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에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 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조해주 먼저 투표율이 낮아짐에 따른 대책으로 우선 재보궐 선거에 한해서 사전투표제 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위원 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사전투표제를 할 경우에 어떠한 제한이 없으면 조직적인 동원 가능성이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 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투표과정에서 사전투표제 를 실시하자는 것이 모든 투표소에 다 설치하자 는 뜻은 아닙니다. 구ㆍ시ㆍ군 단위로 제한된 수 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데 제한을 두면 부재자 투표와 특별하게 달라질 부분이 없다고 보여집니 다. 현재 부재자투표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종전에는 자기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 고 사실은 수가 늘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제 도입하는 것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 해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다 또 조건을 붙인다면 부재자투표제와 크게 다름이 없고 아마 제도의 효과가 반감되리라 생각되고, 현행 선거풍토가 많이 좋아졌고 조직적으로 투표장에 끌어내겠다 는 그런 움직임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 의 30%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 표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크게 제한이 없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사전투표제를 도입한다 면 제한을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저 희 위원회의 판단이었는데, 도입하는 데 아까 위 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검 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투표제 대상 부분은, 현재 선상투표제에 관해서는 재외선거 도입하는 지난 정개특위에서 중점사항으로 재외선거와 함께 다루어졌던 부분 입니다. 그때 파악이 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 재까지 파악된 선원들 현황은 전체적으로 선원수 첩 소지자가 한 8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개정의견 낸 것은, 외국을 항해하는 외항선이나 원양어선만 하고 국내 연근 해 어선은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항선이라든지 원양어선만 가지면 그 숫자가 대폭 줄어듭니다. 한 2만 명 이쪽저쪽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상 자 체는 크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요예산 부분에 300억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큰 예산이 든다고는 전혀 검토된 바 없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300억씩이나 그렇게 든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쉴드팩스를 설치하는 데 대당 2500만 원 정도면 설치를합니다. 그래서 각급 원양어선……

만약 설치를 하는 경우 쉴드팩스를 우리 각 선 관위에 설치하고, 거기서는 팩스로만 보내면 저 희가 받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투표한 부분이 가려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그 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요.

기초의원 매니페스토 부분에 대해서, 매니페스 토는 지금 어떠한 법에도 매니페스토를 하라고 강요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나의 정책선 거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니페스토 운동 이 시작이 됐고 저희 선관위가 주도하는 것도 아 니고 매니페스토추진본부가 주축이 돼서 저희들 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체장 선거가 되었든 의 원선거가 되었든 공약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공 약이 단순하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매니페스토적 인 요소를 담아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 고요.

다만 매니페스토 성격상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단체장과 의원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의원이면 의원에 적합한 매니페스토 모델이 필요하고 그 모델을 저희 선관위에서 매니페스토추진본부와 협의해서 일부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반대하거나 완화하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선숙 위원 선상투표자료는 조금 자세하게 비용까지 해서 주세요.

○**진술인 조해주**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오늘 진술인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국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기 와계신 선생님들께 본의 아닌 피해를 입히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네 분 교수님들, 수업도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남아 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연주 선생님, 조해주 실장님 끝까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권 관련해서 제가 여쭤 볼까 합니다.

재외동포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국민의 국내 투표권 부여는 해외 인적자산 개발 측면에서 굉 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우리 국민의 기 본권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소중하고 역사 적인 의미도 있다 또 한국정치가 한 단계 성숙해 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들이 몇 개 있어서 여쭤 볼까 합니다.

조해주 실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께서도 사전투표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편투표제, 우편투표와 관련 해서 여쭤 볼까 합니다.

재외국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이 해외에 설치한 재외공관에서만 할 수 있지요?

○진술인 조해주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부득이 공간협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이라면 대체투표 한 곳만 선정해서 할 수 있지요?

○**진술인 조해주**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민사회에서 많이 나 오고 있습니다.

○진술인 조해주 예, 알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를테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 재외공관이 50개 주에 12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진술인 조해주 예.

○구상찬 위원 가장 넓은 LA카운티 쪽 예를 한

번 들어 볼게요.

LA 총영사관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소위 남가 주 지역, 애리조나나 네바다주 혹은 뉴멕시코주까지 다 관할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진출인 조해주 예.

○구상찬 위원 그래서 총영사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오렌지카운티 안에 있는분들만 하더라도 두세 시간에서 대여섯 시간씩차를 타고 와서 투표를 해야 되고 또 뉴멕시코나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조 실장님? 그렇지요, 거리상으로?

○진술인 조해주 예.

○구상찬 위원 비행기도 서너 시간씩 타야 겨우투표장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무슨 홍콩이나태국 같은 데 가서 투표를 하고 와야 된다는 이런 상황도 가능하게 됩니다, 거리상으로만 보면. 그렇지요?

○진술인 조해주 예.

○구상찬 위원 한마디로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지요. 학업이나 생계를 포기하고 투표를하러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커서 이것은 투표의 실효성이 없다. 또 바꿔 얘기하면 공관 비상주 국가 이런 데서는 투표할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 실장, 그렇지요?

○진술인 조해주 예.

○**구상찬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재외국민 우편투 표 같은 것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 다.

우리 선관위에서 근자에 해외출장을 한 번 다녀오신 적 있지요,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진술인 조해주 예, 전체적인 재외선거 관리 준비를 위해서 그 실태 파악을 하러 다녀왔습니 다.

○구상찬 위원 거기서도 보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편투표, 재외국민의 대부분은 공관투표를 불편하고 비경제적이며 투표소 접근성이 떨어져서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우편투표도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요지의 결과보고서를 한번 작성한 적 있지요?

○진술인 조해주 예.

○구상찬 위원 제가 이건 공부를 좀 했는데……

그래서 재외국민 우편투표가 필요하다는 데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실장님, 우편투표 도입 문제 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나 계획 이런 게 있으면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 조해주** 우편투표 도입 부분에서는 지 난번 재외선거 도입……

○구상찬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다 한 다음에 한꺼번 에 해 주시면 제가 시간 절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으니까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외선거가 시행되는 국 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우리 정부의 공권력 행사 가 제한적이고 감시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문제를 한번 또 짚어보고자 합니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국외 선거운동의 방법과 선거비용에 관한 특례 등을 통해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16장에 보면 벌칙규정의 적용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별 규정이 없지요?

○진술인 조해주 예.

○구상찬 위원 바꿔 얘기하면 처벌·단속 규정 이 없어서 단속·처벌 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술인 조해주 예.

○구상찬 위원 또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요?

○진술인 조해주 예.

○구상찬 위원 자, 보십시오. 선거비용에 대한 특례는 자칫 잘못하면 재외선거비용의 부정지출, 초과지출 이런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를 선관위에서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7분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어서 2개를 한꺼번에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성호 선생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 관련인데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 매니페스토에 입각해서 정책선거를 하 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랑을 좀 하자면 2009년도에 강지원 대표가 수 상하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는 매니페스 토 약속대상 시상에서 제가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자랑을 좀 하고요. 1분만……

○위원장 김충조 예.

○**구상찬 위원** 후보등록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후보등록일을 20일도 안 챙긴, 저 같은 경우도 후보등록일을 20일도 안 남긴 채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천과정이라는 것이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공천이 늦어지면 유권자들의 선택권 제한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권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역량이나 공약 확인 그다음에 인간성 이런 것들을 다종합해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거지요. 그래서 합리적 평가를 하기 어려워진다. 공천도 시한을 못박아서 한 30일 전으로 해서 좀 길게 하면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2개를 조 실장님하고 임 선생님이 같이 답 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조해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선거에서의 우편투표 도입 부분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개특위에서, 지난 정개특위에서 재외선 거를 도입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정당 간에 상 당히 많은 논의들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재외선 거 개정 의견을 낼 때 극히 불편한 지역, 기본적 으로는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의견을 냈었습니다마는 정개특위 심 의 과정에서 재외선거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공정성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과연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편투표를 하는 경우 집 에서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후보자 매수라든 지 대리투표라든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 들이 계셨고, 재외선거가 도입되기 때문에 공정 성 확보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서로 여야 간에 심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문제점들은 다 충분히 인식을 한 상태에서 그래도 효과적으로 지금 재외선거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없으니까 일단 공관투표소만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문제점이 생길 경우 또 다른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로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정개특위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선거관리위 입 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 씀을 드리고, 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그 공정성 확보 부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저희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합해도 현재 외국은 저희들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가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조약, 영사에 의한 지도정도가 현재 있는 방법인데 법무부에서 그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한 바에 의해도 그러한 제도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새로운 선 거법을 만들든지 형법에 어떤 규정을 해서 재외 선거사범에 대해서 별도의 특칙을 두는 게 필요 하다는 게 저희도 그렇고 법무부의 의견인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선거비용 예를 들어서 외국은 보지 않는 부분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선거비용 부분을 저희들이 파 악,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단속이 어 렵듯이 외국에서 비용 지출한 부분 자체가 파악 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선거비 용으로 볼 경우에 또 다른, 나중에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초과비용지출 부분에 대해서 또 시비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서 지금 외국에서의 선거비용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도록 지난번 개정 의견을, 재외선거 제도가 그렇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 선관위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공정성 확보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리실, 외교부, 그다음에 행안부, 법무부 등 유관 부서와함께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그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이러한 방안들이,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라든지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법……

지금 저희 선관위에서 우선 최소한 선거, 재외국민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우리 선관위 직원이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그런 예방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 만약에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저희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그 증거 수집을해야 나중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거나 할 수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최소 규모라도 재외공관에 보내서 그러한 부분을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대책들을 세워 나가고있는 중입니다.

○구상찬 위원 실장님,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 릴 텐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선관위의 포지셔닝 (positioning)이라고 그럴까요, 자세는 어떻게 하 든지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관위의 주장이 별로 없습니다. 다 얘기를 듣고 좋은 것만 따서 그렇게 잘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우리 조 실장 님뿐만이 아니고, 여러 정치활동을 해 오다 보니 그런 말씀만…… 지금도 조 실장님은 법원이나 또 검찰 혹은 정치권을 다 어우러서 공정성 확보 를 위해서 다 얘기를 듣고 그것을 오거나이즈 (organize)해서 결과를 하나 내서 그걸 하겠다라 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물론 그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 고 하는 본인의 목소리, 그러니까 조 실장의 목 소리라기보다 선관위의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만 따 와서 공정성 확보, 물론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무슨 정치법, 선거법이나 이런 게 관계가 돼서여쭤 보면 즉각 대답이 안 나오고 늘 '기다려 봐라, 확인해 보겠다'이런 게 있거든요. 오늘 이걸말씀드릴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선관위는 본인들의 자세, 선관위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 ○**진술인 조해주**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조** 수고하셨습니다.
- ○구상찬 위원 임 교수님 답변……
- ○위원장 김충조 아, 그래요? 답변하세요.
- ○**진술인 임성호**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그 사안은 제 발표문 가장 말미에 적혀 있고요. 저도 이 발표문에 적었다시피 정당이 후보 등록하는 그 마감일은 선거 30일 전에는 해

야지…… 이것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에 대한 모든 게 제 발표문 뒤에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임 교수님, 한번 더 말씀해 드리라고 기회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충조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오늘 방청인으로서 와 계신 분들이나 또는 오늘 저희 이 공청회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혹시오해하실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공청회는 국회에서의 상임위원회회의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회의의 개의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재적위원이 20인입니다. 그래서 4인 이상이면 개의가 될 수 있다, 물론 표결하는 경우에는 달리정족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 국정감사 준비 또 상임위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 일정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윤석 간사 위원만 하더라도 지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데 심사 도중에 지금 개의정족수를 채워 주시기위해서 오셨다가 질의를 하시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영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위원께서도 잠깐 모습을 드러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가시겠다는 것을 오늘 우리 위원들의 인사라도 전부 마무리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짤막하게 인사하고 가십시오'하고 제가 붙잡았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결산위를 겸하고 있어 가지고 하루종일 그쪽에 있다가, 우리 이용 경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지금 내려왔습니 다.

정치 개혁을 갈망하는 당이고 정치 개혁을 부르짖어 왔던 위원입니다. 제도만으로써 정치 개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도라도 올바르게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아침부터 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진술이나 또는 참고인 발언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해 줬을 텐데 위원들이 여기에 다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그 발제, 진술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할 때는 모든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진정한 정 치 개혁을 이루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 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 니다.

○이용경 위원 저는 아까 잠깐 그 설명을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인 터넷에서는 그걸 풀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왜 인터넷상에서는 미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풀어 주는 것이 필요한지.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들어보니까 이 정당정치라는 것이 공천 관련해서 여러 분들 얘기를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물론 공천…… 정당의 강화가 필요하다, 역할이. 그러면서도 또 국회의원들 간에는 '야, 정당의 당론이 있기 때문에 소신을 못 펴겠다'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열거를 하시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 꼭 필요한 게 뭔가, 요다음 단계, 우리가 만점짜리 정치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것 하려면 또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 이 단계에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희망' 그러한 모범답안보다도 지금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서 다음에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제도는 뭔가, 고쳐야 될 건 뭔가, 이런 식으로 한번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답변보다도 여러 가지 진술을 하시고 자문을 해 주실 때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의문 나는 것은 아까 선심행정이라 그 릴까, 인컴번트(incumbent)들이 하는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된 선심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제약 하는 것 같다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그것하고, 현직자한테 특별히 유리한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라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어떤 분이 발언을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좀 코멘트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 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조해주**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으로 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큰 기본적 인 방향이 돈은 묶고 입은 풀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가능한 한 선거비용이 많이 수반되지 않 는 선거운동 방법은 허용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실제, 물론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들을 비싼 돈 들여서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돈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 닙니다.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이용 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용경 위원** 돈 문제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술인 조해주** 아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요.

지금 현대 정치에서 직접 유권자와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 간의 일반 다른 홍보 방법들은 대개 일방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일방성인데 최근 인터넷을 이용하면 다양한 기법들이나 통신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쌍방향 대화가 가능하고 정치인과 유권자들간에 어떠한 근접성이나 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고 정치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수단들이 되고 있고, 특히 요즘처럼 투표율이 낮은때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활발하게 정치적인 견해들이 서로 교환되고 할 경우에는 역시 투표율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처음에 낸 게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터넷에 의한 선 거운동을 허용하자고 했고 일반적인 언론이나 시 민단체, 대부분의 여론도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 동은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인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초한 그런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비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금지되어 있는 현재에도 이런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하거나 하는 부분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요,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부분은 역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게재될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수사해서 처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익명성에 힘입어서 뒤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 거나 비방하는 부분은 똑같이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을 풀어주도록 저희들이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의 선심행정을 완화하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의견 낸 것은 없고요. 자 치단체들의 통상적인 그런 직무상 행위도 선거법 에 너무 엄격하게 규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완화해 주되, 다만 자치단체장들 이 그러한 행위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선전하지 않도록, 오히려 지금은 법이나 조례 등에서 허용 되는 행위는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쓸 수 있습니 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신 이름도 쓸 수 없도록, 자치단체명의로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저희들이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선심행정을 허용하자 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우리 아홉 분 위원께서 질 의해 주셨고 공술인 여러분께서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회의 진행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마쳐졌습니다. 그런 데 관련 법규에 의하면 추가질의 내지는 보충질 의가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오 늘 공술인분들이 상당히 장시간 동안 수고를 해 주셔서 피로감이 겹친 것 같은데, 꼭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충조 민주당의 양승조 위원님, 추가 질의 내지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양승조 위원** 천안갑의 양승조 위원입니다. 우리 조해주 실장님, 아까 구상찬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외국민 우편투표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선거의 자유선거라든가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걸 어떻게확보할 것인가, 공정성 문제지요. 또 나아가서 이런 공선법 위반 시에 형사관할권이 미치지 않은관계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는가, 선거비용을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추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편투표를 시행하는 것은상당히 위험하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그 점에 특별히 유념해서 생각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내년에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가 정당 추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 지요?

○진술인 조해주 예.

○양승조 위원 그런데 그분들 기호를 1·2·3· 4로 하면 우리 일반 정당 추천 후보가 만일 유지 됐을 때 정당 추천 후보로 오인될 가능성이 충분 히 있지요? 만약 정당추천제가 유지되고 그분들 이 1·2·3으로 나간다면 기호순서를 가·나· 다·라로 하고 추첨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그 법안을 낼 건데 한번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만약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유지 시에 정당 내 후보자 간에 성별로 이렇게 번호가 붙여지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김 씨 성을 가지신분이 당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선거에 있어서 조상 탓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공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내 후보자 간에 만약 중대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에 반드시 추첨에 의해서 우리가 기호순서를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그것은 제 의 견이기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거든요. 그 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진만 교수님한테 몇 가지 짧게 묻겠습니다.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에서 '우리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원의 수를 대폭 늘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의원 수를 대폭 늘려야 되는 것에 동의하실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말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임성호 교수님 가셨군요.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신데 그랬을 때 옛날에 우리가 흔히 지구당의 폐해, 돈 먹는 하마, 고비용 저효율, 특히 운영경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물론 현재 운영협의회 형태에 있어도 법 위반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구당 부활이든지 운영협의회를 어떤 법적기구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운영경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중앙당에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이 문제를함께, 우리 조진만 교수님께서 연구해 주셨으면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이연주 회장님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공천비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공천비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외부인사가 30% 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또 각 지역구에서, 각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최소단위가 중앙광역시당 아니면 도당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천비리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고 다수라기보다는 소수다, 물론 그것도 근절되어야 되지만 이게 일반화된 행태는 아니라는점,이 점도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조진만** 양승조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은 지역주의 관련해서 비례대표의원의 증가를 얘기했는데 과연 현실적 으로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의원의 대 폭 증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쉽지는 않겠 지요. 국민 정서가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의원 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을 할지 몰라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정 치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의원 구조조정하 기 위해서, 정치를 구조조정한다는 게 사실 우스 운 얘기이지 않습니까? 정치가 경제적인 마인드 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정치적인 대 표성,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몇 명의 유권자 들을 대표하는가, 선진국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가 OECD국가라든지 선진국 중에서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의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좌기구가잘되어 있기 때문에 하원의원이 60만 명 한다 그래도 보좌관이라든지 지원체계를 통해서 의정 활동하고 법안 활동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체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의원들 줄이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게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을 줄여 가지고 비례대표를 맞추는 것도, 어느의원님께서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공론화하고 한국의 의원 정수가, 모든 기준을 통해서 봐도 한국의 국회의원정수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과대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공론화시키고 지원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을 해 가지고 오히려 국회를 비판만 할 게이니라 좀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설득을 해야되는 거지요. 학자들도 하고 정치,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다른 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당,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임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저도 지구 당에 대해서는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 로 지구당 형태는 필요하다, 정당의 하부조직은 필요하다……

선거운동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0년도에 선거법 개정하고 그럴 때는 공명선거를 위해서 규제가 세더라도 지금은 금권선거하고 부정선거 막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합의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심해도 관용될 수 있었습니다. 수용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공정선거가 되고 공명선거가 정착이 되니까 자유로운 부분, 선거의 자유, 창의성 이런 것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논의가 되고 그 것들이 설득을 얻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당, 돈 먹는 하마다 그래 가지고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지구당 폐지가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 협의체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구당 형식으로 해 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학자들 입장에서는

하여간 지금 정도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게 하부조직 발달하고 그런 정당 시스템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부활을 하자는 게, 그런 것을 하자는 게 좀 시기상조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서 좀더 나중에 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가고 지금 정도면 한번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에 문제가 되는 현실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그렇지만 과연 지구당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정치자금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묶여 있지 않습니까? 만일 가능하다 그러면 외국도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정치에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을 너무 아까워하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정치발전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모금하고 후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까지 비판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얼마를 모았건 그것은 정치인들의 역량, 능력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상당한 양을 모아 서 정치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민주주의의 발 전을 위해서 정당한 방식으로만 쓰면 그 정도에 서 관용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려주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그 범위 내에서 관용 수준을, 충분히 어려움 없이 모금하고 쓸 수 있는 범위를 해 놓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비정상적으로 받았다든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게 그게 훨씬 좋은 정치제도일수 있고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조 위원** 고맙습니다.

○진술인 이연주 위원장님, 양 위원님 비롯하여 아까 오전에도 그렇고요, 공천 과정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냥 끝까지 말씀 안 드리려다가 한 케이스만 예를 들겠습니다.

공천비리라고까지 말하기도 좀 뭣한 아주 심플한 예인데요. 이미 이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어느 당이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지

난번 4·29 보궐선거 때 외부인사로 참여한 고대 안모 교수하고 숙대 강모 교수가 공개적인 장소 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공천심사위원에 외부인사로 들어갔는데 본인들이 본 적도 없는 서류, 서류상에는 전혀 본 적 없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공천이 됐더라라는 것을 저희 여성계 모인 어느 자리에서 실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외부인사가 들어오셔서 아주 공정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이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지방에,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용경 위원** 한나라당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 은데요.

○張倫碩 委員 그런 일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충조 우리 이 회장께서 어느 당이라고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당인지는 아무도 모르겠네요. 저는 민주당은 아니지 않겠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양승조 위원** 왜냐하면 공천이 아주 잘되고 있 다라기보다는 그런 비리라든가 우리가 근절해야 될 폐해가 일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어떤 공천의 투명성이라든가 민주적인 절차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진술인 이연주 예, 노력은 하시지만 외부인사들이 거의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요, 만일 이렇다면.

○양승조 위원 외부인사들이,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러리 역할을 안 하라고 우리가 30% 정도를이렇게 할당해 주고 그러는 건데……

○**진술인 이연주** 그 들러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잘 못했다'라고 한 경험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더 이상……

말씀하십시오.

○張倫碩 委員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당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공천 과정과 절차를 공

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문제와 국회의원 선거 또는 기초지방선거에서 공천제를 아예 폐지할 거냐 하는 문제와는 논리적 인과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점은 견해를 같이하시나요? 국회의원 선거 이제 폐지해 버리……

○**진술인 이연주** 아니요. 국회의원 선거도 그런 데 하물며 ……

○張倫碩 委員 공천제……

○**진술인 이연주** 예, 정당공천제에 따른 구체적 인 비리의 사례들은 여기 위원님들께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 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장도 이 각본을 보고 회의를 진행하거든 요. 그런데 우리 실무진이 여기에다 '짧은 시간에 공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제 가 생각할 때는 오늘 참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이 짧지 않은 시간에 공술인 여러분 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음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공술인 여러분들의 공술된 진지하고 알찬 내용들은 우리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진적 정치 지향을 위해서 마련하게 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반영이 되리라 또 깊이 참고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늘 나와서 공술해 주신 공술인 여러분께 진정 감사를 드리고 오늘 늦게 까지 자리를 지켜서 빠듯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청회에 황금 같은 시간을 내주신 위원 여러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직선거 제도에 대한 공청회 순 서를 전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 공청회 가 있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 일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구 상 찬 권 영 길 김 충 조 강 기 정 양 승 조 유기준 박 선 숙 서 갑 원 이춘석 이경재 이 범 래 이 용 경 장 유 석 주 호 영 최 재 성 정 진 섭

○청가 위원(1인)

최 구 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 병호

○출석 진술인

조진만(인하대학교 교수)

김영태(목포대학교 교수)

손혁재(경기대학교 교수)

임성호(경희대학교 교수)

이연주(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조해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안상수	이경재	한나라당	2009.6.8
백원우	박선숙	민주당	2009.6.22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발의) (2008. 6. 3 이명수 의원 외 9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08. 6. 13 진영·강성천·김성곤·김성수·김종률·김학용·김효재·김희철·남경필·배영식·신지호·안상수·양승조·원희목·유성엽·유일호·이정선·이화수·임해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 발의)

정양석·조원진·홍일표 의원 발의)

(2008. 6. 18 김종률·김진표·김재윤·노영 민·권선택·이시종·양승조·이광재·송민 순·오제세·변재일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2008. 6. 23 김학송·이계진·김정권·김장 수·김동성·김성회·조진래·김성곤·남경 필·박상은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 발의)

(2008. 6. 24 김소남·이계진·강성천·윤석 용·임태희·강창일·조전혁·현경병·손범 규·안상수·김성수·정갑윤·임두성·구본 철 의원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

(2008. 7. 1 주광덕·윤석용·고승덕·김태원· 정병국·정양석·김동성·신상진·남경필· 이화수·황영철·장광근·이윤성·김효재 의 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 발의)

(2008. 7. 4 김희철·강창일·강길부·김우남· 윤석용·김정권·송민순·양승조·장세환· 임두성·송영선·안상수·김성순·이미경· 박선숙·최철국·홍정욱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08. 7. 7 이은재·구본철·임태희·이윤석· 김효재·박종희·배은희·이정선·심재철· 신영수·김성태·이혜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08. 7. 10 최규식·강창일·김희철·이한 성·김종률·안민석·박기춘·이명규·김재 균·안상수·문희상·장세환·이혜훈·최문 순·이진삼·신상진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08. 7. 11 진영·강석호·김성태·김정 권·김희철·박대해·박선영·박준선·송영 선·신상진·이명수·이진삼·이한성·이혜 훈·정태근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률 의원 대표발의)

(2008. 7. 16 안경률·김학송·김소남·김희철·임동규·이명수·강성천·박기춘·이성남·신학용·조진형·이해봉·이명규·김종률·이성헌·이경재·구본철·김정권·김성태·백성운·손범규·김정훈·신상진·오제세·이혜훈·정태근·이진삼·김성조·이한성·김성수·김성회·송광호·이화수·박대해·정갑윤·김동성·이정선·현기환·박선영·김부겸·배은희·김충환·김세웅·박종희·진성호·최인기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하균 의원 대표발의)

(2008. 7. 16 정하균·이진삼·김소남·노철 래·김성조·양정례·이한성·박준선·김충 조·유성엽·이상민·김성태·이정선·나경 원·곽정숙·황우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 발의)

(2008. 7. 17 윤석용·우제창·김희철·박종 희·양정례·이한성·홍정욱·이정선·정하 균·김소남·유성엽·신상진·이화수·이진 삼·임두성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 발의)

(2008. 7. 17 윤석용·우제창·김희철·양정 례·고승덕·김성태·정해결·정하균·김소 남·정양석·이종구·유성엽·신상진·이진 삼·임두성·김재윤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 발의)

(2008. 7. 18 곽정숙·홍정욱·정하균·이진 삼·김성곤·박은수·이한성·김성태·김희 철·강기갑·홍희덕·권영길·이정희 의원 발 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08. 7. 18 김영선·김성수·유성엽·유기 준·안상수·김태원·구본철·신상진·강석 호·박종희·홍장표·김종률·안효대·이진 삼·이한성·송광호·유재중·황우여·김성 곤·이해봉·박대해·김영우·양정례·홍일 표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심재철·김태원·정희수·배영 식·구본철·손범규·강명순·황영철·임해 규·정해걸·박종희·이정선·김성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 발의)

(2008. 7. 21 허원제·유정복·이한성·양정례·유성엽·구본철·남경필·손숙미·안홍준·신상진·정하균·이진삼·이정선·박영아·황우여·박대해·정해결·윤영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22 심재철·김소남·안효대·조전 혁·원유철·주광덕·강명순·안상수·신상 진·정해걸·김성회·허원제·김금래·박종 희·홍정욱·장제원·백성운·조문환·현경 병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 발의)

(2008. 7. 23 정장선·강창일·김진표·김충조· 박기춘·백재현·신학용·오제세·우제창· 이석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2008. 7. 23 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홍준· 안상수·유성엽·신영수·박종희·강석호· 송광호·황우여·정해걸·정영희·이혜훈· 김성태·이상민·정하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 발의)

(2008. 7. 24 서갑원·유정현·유성엽·장세환· 이진삼·김종률·안홍준·이한성·정하균· 김세연·박선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2008. 7. 24 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홍 준·안상수·유성엽·박종희·강석호·송광 호·황우여·조해진·이혜훈·김성태·이상 민·정하균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2008. 7. 24 박선영·김낙성·김용구·김창수·류근찬·박상돈·권선택·변웅전·심대평·이명수·이영애·이용희·이재선·이진삼·이회창·임영호·조순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2008. 7. 25 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홍준· 안상수·유성엽·신명수·박종희·강석호· 송광호·황우여·이혜훈·나경원·김성태· 이상민·정하균·박보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 발의)

(2008. 7. 28 최구식·한선교·구본철·양정례· 강석호·이한성·이진삼·정의화·유성엽· 안상수·정해걸·이성헌·박보환 의원 발의)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률안(구본철 의원 대표발의)

(2008. 7. 30 구본철·강성천·고승덕·김소남· 김정훈·김충조·김태원·박상돈·백성운· 안홍준·양정례·이경재·이성헌·이한성· 정하균·정해걸·조경태·황영철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

표발의)

(2008. 7. 31 김정권·정희수·김학송·유기준· 양정례·한선교·이성헌·이한성·백성운· 김장수·허태열·권영진·안홍준·신상진· 윤상현·김효재·박보환·박준선·박상돈· 박종희·김동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08. 8. 1 박기춘·강창일·전병헌·정장선· 김진표·양정례·우제창·오제세·박병석· 김재윤·양승조·안민석·전혜숙·최재성· 우윤근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8. 8. 1 양승조·김춘진·박기춘·최영희· 김충조·안상수·김낙성·김종률·김영진· 박종희·이한성·이낙연·박선숙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2008. 8. 5 최구식·김태환·문학진·김태원·유기준·구본철·양정례·한선교·김성곤·이춘식·박기춘·김성태·이한성·유승민·현기환·정해걸·신상진·홍희덕·서청원·이혜훈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8. 8. 8 권경석·허범도·허태열·정갑윤· 안홍준·김정권·이한구·정해걸·이명규· 김성조·신성범·김재경·허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2008. 8. 11 정갑윤·노철래·이한성·김소남· 김성조·구본철·정해걸·조윤선·강길부· 김영우·김학송·양정례·송훈석·신성범· 김동성·이화수·송영선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2008. 8. 13 홍재형·양승조·송광호·오제세·김종률·전혜숙·김유정·이상민·이시종·김성곤·배영식·이낙연·변재일·이용섭·조영택·노영민·김광림·김재윤·박주선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2008. 8. 14 김희철·박영선·송영길·양승조·김성곤·이낙연·박지원·김종률·김영진·송영선·조윤선·김기현·박종희·최철국·박선숙·오제세·유성엽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2008. 8. 14 김성회·강명순·강석호·강성천·

김성수 · 김성태 · 김태원 · 김효재 · 박보환 · 박순자 · 손범규 · 신영수 · 안상수 · 안효대 · 윤영·이한성·이화수·조윤선·허범도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 의)

(2008. 8. 18 임동규·유기준·양정례·백성운· 고승덕 · 송영선 · 김성태 · 강승규 · 이정선 · 김태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 발의)

(2008. 8. 19 임동규・유기준・양정례・백성운・ 송영선 · 김성태 · 강승규 · 이정선 · 김태환 · 윤석용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 발의)

(2008. 8. 20 김성회·강석호·강승규·김성태· 김태원 · 김효재 · 나경원 · 남경필 · 박종희 · 배은희·백성운·손범규·정병국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08. 8. 21 김상희·이혜훈·김재윤·김동철· 곽정숙 · 이정희 · 이미경 · 이애주 · 최문순 · 신낙균 · 김금래 · 박선숙 ·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성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김동성·안상수·양정례·백성운· 이한성 · 김소남 · 박준선 · 김성수 · 홍정욱 · 손범규·신상진·홍일표·정해걸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이정현·박상돈·이경재·황영철· 신학용 · 신성범 · 한선교 · 김태원 · 홍장표 · 유성엽 · 이해봉 · 장광근 · 김무성 · 이성헌 · 정영희 · 김영우 · 임두성 · 유승민 · 이성남 · 구본철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이정현·박상돈·이경재·황영철· 신학용 · 신성범 · 한선교 · 김태원 · 홍장표 · 유성엽 · 이해봉 · 장광근 · 김무성 · 이성헌 · 정영희 · 김영우 · 임두성 · 유승민 · 이성남 · 구본철 의원 발의)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이정현·박상돈·이경재·황영철· 신학용 · 신성범 · 한선교 · 김태원 · 홍장표 · 유성엽 · 이해봉 · 장광근 · 김무성 · 이성헌 · 정영희 · 김영우 · 임두성 · 유승민 · 이성남 · 구본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 발의)

(2008. 8. 25 신낙균·이종걸·박기춘·이광재· 양승조 · 장세환 · 김희철 · 안규백 · 신학용 · 김충조ㆍ이용섭ㆍ김성순ㆍ김우남ㆍ홍희덕 의 워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 발의)

(2008. 8. 26 백원우·박기춘·최재성·양승조· 김종률 · 조경태 · 김충조 · 김재윤 · 박선숙 · 이광재 의원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08. 9. 1 강창일·김종률·정하균·강기정· 양승조 · 유선호 · 박기춘 · 이낙연 · 서종표 · 김희철·홍희덕·이윤석·황영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 발의)

(2008. 9. 2 이시종·변재일·우제창·이광재· 김종률 • 백재현 • 김희철 • 이명수 • 노영민 • 오제세 · 박상돈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2008. 9. 2 이시종·우제창·변재일·이광재· 백재현 · 김희철 · 이명수 · 노영민 · 오제세 · 박상돈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08. 9. 3 조해진·양정례·임동규·정영희· 김태원 · 신영수 · 강석호 · 박보환 · 박선영 · 신상진 · 이한성 · 정하균 · 구본철 · 현기환 · 한선교 · 유기준 · 유성엽 · 박종희 · 현경병 · 권영진 · 김종률 · 강기정 · 장제원 · 강길부 · 김충조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08. 9. 5 박주선·김동철·송민순·전혜숙· 김진표 · 안규백 · 송영길 · 이종걸 · 이무영 · 유선호 · 이인제 · 조정식 · 김우남 · 우제창 · 오제세・조영택・양승조・최재성・주승용・ 강창일 · 최인기 · 김희철 · 김영진 · 변재일 · 서종표 · 박기춘 · 원혜영 · 장세환 · 문학진 · 김세웅 · 천정배 · 백원우 · 이용섭 · 김유정 · 전현희 · 신학용 · 안민석 · 박상천 · 백재현 · 서갑원 • 우윤근 • 홍재형 • 이낙연 • 박지원 •

강기정·김종률·김성곤·전병헌·김재균· 김상희·김춘진·정세균·강봉균·조배숙· 김성순·이미경·이강래·최규성·최영희· 조경태·최문순·박영선·문희상·권선택· 강성종·김낙성·임영호·류근찬·김창수· 이용경·정하균·노철래·양정례·김을동· 강기갑·곽정숙·권영길·홍희덕·이정희· 김부겸·변웅전·이재선·김용구·박상돈· 이명수·박선영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8. 9. 5 권경석·신상진·박기춘·권영진· 구본철·허범도·손숙미·김소남·김태원· 정갑윤·고승덕 의원 발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8. 9. 5 권경석·유성엽·신상진·권영진· 구본철·허범도·손숙미·김소남·김태원· 정갑윤·고승덕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식 의원 발의)

(2008. 9. 9 최규식 의원 외 8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발의) (2008. 9. 9 김유정 의원 외 82인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발의) (2008. 9. 9 김희철 의원 외 8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08. 9. 17 정희수·정해걸·박대해·허태열· 안상수·이혜훈·박보환·이한성·정하균· 박종희·김종률·이진삼·강석호 의원 발의)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08. 9. 17 최규식·강창일·유성엽·박기춘· 박선영·강석호·안민석·김충조·안규백· 우제창·김성순·김영진·김종률·이명수 의 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 발의)

(2008. 9. 19 홍장표·권영진·김성수·김성태· 김을동·김태환·노철래·백성운·안상수· 유성엽·이재선·이철우·정갑윤·정영희· 한선교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8. 9. 23 강창일 · 이윤석 · 이종걸 · 강기정 ·

안민석·김희철·김종률·우윤근·신학용· 김재윤·김영진·김세웅·김우남·박기춘 의 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 발의)

(2008. 9. 24 유기준·김희철·이한성·이종혁·백성운·김재윤·이진삼·이인기·구본철· 정병국·박종희·임동규·김효재·송영선 의 원 발의)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08. 9. 30 장광근·강성천·구본철·박기춘·홍일표·정영희·양정례·오제세·강석호·신낙균·이인기·유성엽·박상돈·안홍준·진성호·현기환·정해결·정하균·이화수·박종희·이정선·이경재·서청원·신상진 의원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15 정부 제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 발의)

(2008. 10. 28 윤두환·이인제·이재선·현기환· 강창일·김세웅·윤영·김성순·신영수· 박상은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2008. 10. 16 권택기·권영진·남경필·조문환·김선동·김정권·강승규·나경원·이달곤·김용태·이정현 의원 발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2008. 10. 16 권택기·권영진·남경필·조문환· 김선동·김정권·강승규·나경원·이달곤· 김용태·이정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대표 발의)

(2008. 10. 20 이진삼·김장수·김용구·변웅전· 이해봉·임영호·이상민·류근찬·김영진· 김낙성·김창수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08. 10. 28 이용섭·김재균·김우남·김영록·김세웅·박기춘·최인기·홍재형·우윤근·주승용·최철국·이시종·노영민·김유정·김성곤·김재윤·서갑원·강기정·박주선 의원 발의)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08. 10. 28 이용섭·김재균·김우남·김영록· 김세웅·박기춘·최인기·홍재형·우윤근· 주승용·최철국·이시종·노영민·김유정· 김성곤·김재윤·서갑원·강기정·박주선 의 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08. 10. 28 이용섭·김재균·김우남·김영록· 김세웅·박기춘·최인기·홍재형·우윤근· 주승용·최철국·이시종·노영민·김유정· 김성곤·김재윤·서갑원·강기정·박주선 의 원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5 최규식·양승조·유성엽·최규성· 안상수·박기춘·이화수·안홍준·김재균· 김희철·정갑윤·김충환·정하균·황우여· 장세환·김성수·이명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6 성윤환·강석호·김광림·김태환· 안상수·유기준·유재중·이경재·정해결· 정희수·조원진·최구식·현기환·홍사덕· 홍장표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6 성윤환·강석호·김광림·김태환· 안상수·유기준·유재중·이경재·정해결· 정희수·조원진·최구식·현기환·홍사덕· 홍장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7 유성엽·김정권·강석호·김영록·이무영·장세환·강운태·정하균·황우여· 우제창·정병국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7 진수희·손숙미·조진형·이달곤·이정선·정태근·김성희·정옥임·김동성·이애주·김금래·양정례·조진래·신지호·정영희·유성엽·김용태·이춘식·현경병·차명진·권택기·배영식·정양석·박종근·김광림·김성식·김재경·강운태·안형환·공성진·박준선·안민석·주광덕·정진석·

김종률 · 이성남 · 원희목 · 김을동 · 나성린 · 백성운 · 심재철 · 강성천 · 조문환 · 김태원 · 이화수 · 황영철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범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2 이범래·박준선·황영철·김선 동·이종혁·김정권·이은재·주호영·김성 수·정양석 의원 발의)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2 이범래·이종혁·김선동·황영철·박준선·이은재·김정권·주호영·김성수·정양석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4 김성순·백원우·김춘진·김성곤· 우제창·안규백·김종률·이용삼·박기춘· 노영민·김희철·김재윤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 표발의)

(2008. 11. 24 이종걸·강창일·천정배·변재일· 양승조·장세환·김춘진·최문순·최철국· 전현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5 최인기·최규식·이무영·권경석· 조진형·강기정·김유정·김충조·김희철· 이윤석·김태원·신지호·유정현·이은재· 이인기·장제원·정갑윤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6 권선택·임영호·류근찬·김창수·박상돈·이명수·이상민·이재선·박선영·이용희·심대평·김낙성·변웅전·김용구·이진삼·이회창·문국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26 안경률·이한성·이진삼·김정권·유기준·신상진·구본철·박종희·송영선·김희철·원희목·김우남·김재윤·이정선·최영희·최인기·김소남·김효재·강석호·손범규·박보환·김동성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7 강기정·김희철·이용삼·김재균·김동철·송영길·양승조·강창일·조영택·이미경·김우남·김종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28 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

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 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 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28 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 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 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 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08. 12. 2 양승조·안민석·송영길·최영희· 김동철·강기정·변재일·이석현·문학진· 김춘진·홍재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 발의)

(2008. 12. 2 안경률·임동규·이한성·김정훈· 이군현·이춘식·이윤성·최병국·정영희· 허천·신성범·백성운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8. 12. 2 양승조·최영희·김동철·강기정· 변재일·안민석·이석현·문학진·김춘진· 홍재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 발의)

(2008. 12. 3 안경률·이한성·임동규·유성엽· 김정훈·이군현·이춘식·이윤성·최병국· 정영희·허 천·신성범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 (2008. 12. 4 최철국·김재균·김영진·강기정· 양승조·우윤근·주승용·전현희·이광재· 백원우·최규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08. 12. 10 강창일·조윤선·전혜숙·이계진· 안홍준·조문환·송광호·주호영·양승조· 김상희·김재윤·이윤석·최문순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2008. 12. 12 홍재형·양승조·변재일·이성남· 김충조·노영민·백원우·이용섭·안규백· 박지원·서종표·김종률·박기춘·이춘석· 전혜숙·최규성·송민순·김유정·김영록· 김부겸·박선숙·오제세·강창일·이시종 의 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

(2008. 12. 12 고승덕·김영선·박선숙·공성진· 손숙미·유정현·이한성·박민식·허태열· 이명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 발의)

(2008. 12. 16 박준선·유정현·김성회·정진섭· 정갑윤·권경석·강성천·손숙미·홍장표· 고승덕·유재중·이주영 의원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8. 12. 16 임동규·이달곤·정희수·주성영· 고승덕·이주영·임해규·이한성·원희목· 임두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 발의)

(2008. 12. 17 주성영·최구식·성윤환·유승민· 이한성·유성엽·나경원·양정례·김성곤· 정하균·김정훈·임동규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008. 12. 23 문희상·송민순·유성엽·홍희덕·홍재형·서종표·박지원·김재윤·신학용·김진표·이시종·황우여·오제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

(2008. 12. 26 이진복·최구식·박민식·유승민· 유기준·김무성·김광림·유성엽·박종희· 이종혁·이명규·조문환·이학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

(2008. 12. 29 이진복·최구식·박민식·유승민· 유기준·김무성·김광림·유성엽·이종혁· 이명규·조문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 발의)

(2009. 1. 5 김충환·송민순·유성엽·정미경· 김기현·이한성·권영진·안상수·임해규· 김성수·이시종 의원 발의)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률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

(2009. 1. 9 정태근·김정권·조정식·최연희·김영우·주광덕·배은희·정두언·조진래·김성식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09. 1. 13 안효대·김성수·나성린·이종구· 이한성·정몽준·주광덕·임동규·정갑윤· 김세연 의원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 발의)

(2009. 1. 16 이성헌·김정권·임두성·김재윤· 김성수·이한성·유성엽·안홍준·신상진· 박대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 발의)

(2009. 1. 19 권선택·심대평·김용구·이재선· 이용희·변웅전·김낙성·이명수·임영호· 이회창·김창수·박상돈·류근찬·이진삼· 조순형·이영애·박선영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 (2009. 1. 19 권선택·심대평·김용구·이재선·이용희·변웅전·김낙성·이명수·임영호·이회창·김창수·박상돈·류근찬·이진삼·

조순형·이영애·박선영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 발의)

(2009. 1. 19 권선택·심대평·김용구·이재선· 이용희·변웅전·김낙성·이명수·임영호· 이회창·김창수·박상돈·류근찬·이진삼· 조순형·이영애·박선영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 (2009. 1. 29 박병석 의원 외 81인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9. 1. 29 김춘진·홍재형·양정례·김진표· 유성엽·김재윤·김성곤·박대해·김상희· 이용경·최재성·김소남 의원 발의)

국회의원 보좌진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9. 1. 29 김춘진·홍재형·양정례·김진표· 유성엽·김재윤·김성곤·박대해·김상희· 이용경·최재성·김소남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9. 1. 29 김춘진·홍재형·양정례·김진표· 유성엽·김재윤·김성곤·박대해·김상희· 이용경·최재성·김소남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09. 1. 30 김영진·양승조·홍재형·강창일· 유원일·유성엽·안민석·권영길·김재균· 강기갑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이범래 의원 대표발의)

(2009. 2. 2 이범래·이은재·정양석·이종혁· 김선동·박준선·황영철·강명순·윤석용· 김성태·김세연·박보환·김성수·원희목· 김효재·이애주·강석호·여상규·김학용· 신지호·장제원·허원제·손숙미·안효대· 유일호·이진복·고승덕·조윤선·유정현· 윤상현·이정선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9. 2. 3 양승조·홍재형·안민석·송민순·최영희·백원우·주승용·강창일·김재균·김재윤 의원 발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9. 2. 3 양승조·안민석·김우남·강기정· 백원우·최철국·주승용·강창일·김재균· 김재윤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 (2009. 2. 3 송민순·강창일·김성곤·김성수·김세연·김영진·김재균·김재윤·김정권·김충조·김충환·문학진·문희상·박은수·박주선·서종표·송영길·안민석·안상수·안홍준·양승조·양정례·우윤근·우제창·유성엽·유정현·이미경·이애주·이용경·이용삼·이용섭·이윤석·전병헌·전혜숙·정국교·조배숙·주승용·최문순·최영희·홍재형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9. 2. 3 박영선·최철국·이낙연·김재윤·신낙균·전현희·백원우·전병헌·유선호·이춘석·강기정·신학용·원혜영·서갑원·송영길·박지원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

(2009. 2. 3 권경석·김정권·김성수·신지호·임해규·정해걸·이범래·김소남·이은재·김성조·이명규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 발의)

(2009. 2. 6 안경률·원유철·백성운·이군현·임동규·현경병·최병국·진성호·김소남·이춘식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

(2009. 2. 10 양승조·신학용·최재성·우윤근· 안민석·강창일·김우남·강기정·백원우· 최철국·주승용·김재균·김재윤 의원 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9. 2. 11 강창일·김춘진·양승조·홍재형· 박은수 · 장세화 · 김우남 · 이윤석 · 이시종 · 홍희덕 의원 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09. 2. 16 이은재·임동규·김정권·안효대· 원희룡 · 김광림 · 이성헌 · 정양석 · 원희목 · 강석호 · 윤석용 · 박보환 · 주광덕 · 이한성 · 윤영·김태원·박종희 의원 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09. 2. 16 노영민·김재균·김성순·문학진· 이용삼・홍재형・우윤근・주승용・김유정・ 안규백·최철국·강운태 의원 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09. 2. 17 손숙미·김성수·손범규·백성운· 신지호 · 박준선 · 나성린 · 이화수 · 안상수 · 안효대·김소남·강석호 의원 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09. 2. 25 강기정·강창일·양승조·김동철· 김재균 · 김우남 · 최재성 · 최인기 · 이미경 · 안민석 의원 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09. 3. 3 진영·구상찬·김성수·김춘진· 손범규 · 송민순 · 송영선 · 이한성 · 임두성 · 정영희 의원 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09. 3. 5 김재균·송민순·김동철·김재윤· 최철국 · 노영민 · 양승조 · 주승용 · 강기정 · 장세환 의원 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2009. 3. 9 허태열·유정복·정희수·임동규· 김효재 · 김태환 · 이명규 · 배은희 · 한선교 · 김정훈ㆍ이인기ㆍ손범규ㆍ정해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3. 9 정희수・안상수・유기준・정해결・ 황우여 · 이화수 · 이인기 · 오제세 · 안효대 · 이한성 · 손범규 · 배영식 · 김충환 · 김태환 · 김성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 발의)

(2009. 3. 10 송훈석·박민식·이화수·이계진· 최욱철 · 김우남 · 정해걸 · 이사철 · 조문환 · 이윤석·김영우·김낙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09. 3. 10 김영진·김진표·김재윤·천정배· 안민석·신학용·박지원·조배숙·김희철· 김춘진 · 김영록 · 최규성 · 정해걸 · 이춘석 · 김성순 · 강운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 발의)

(2009. 3. 11 김낙성·우윤근·김창수·송훈석· 임영호 · 최인기 · 이재선 · 심대평 · 최철국 · 류근찬·김용구·이영애·이상민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

(2009. 3. 11 양승조·강창일·홍재형·이석현· 김춘진 · 전현희 · 김진표 · 김우남 · 유성엽 · 송영길·김상희·이종걸·곽정숙 의원 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 (2009. 3. 13 정태근·양승조·조진래·김성태· 김성식 · 권영진 · 김영우 · 김정권 · 조정식 · 남경필·윤석용·주광덕 의원 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009. 3. 16 윤석용·이한성·김성태·이명수· 정영희 · 박은수 · 곽정숙 · 원희목 · 손범규 · 임두성·박준선 의원 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009. 3. 18 윤석용 · 권영진 · 안상수 · 임두성 · 김옥이 · 원희목 · 김효재 · 이윤성 · 박준선 · 김성수 의원 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2009. 3. 19 김학송·유승민·이한성·김무성· 김장수 · 김옥이 · 서청원 · 김성회 · 정갑윤 · 이경재 의원 발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 발의)

(2009. 3. 19 문학진·강창일·김동철·김성순· 김영진 · 김재균 · 김재윤 · 김희철 · 박기춘 · 박주선 · 박지원 · 백재현 · 송민순 · 안규백 · 유성엽·유원일·이미경·최규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09. 3. 19 강기정·김우남·이미경·김동철· 양승조 · 강창일 · 최영희 · 최인기 · 전혜숙 · 서갑원·이용섭·안민석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09. 3. 25 최재성·김춘진·최문순·김진표· 강창일 · 김우남 · 유원일 · 백원우 · 곽정숙 · 박기춘 · 전현희 · 안민석 · 박은수 · 김영진 · 김성순 · 우제창 · 김재윤 · 송영길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09. 3. 25 최재성·김춘진·최문순·김진표· 강창일 · 김우남 · 유원일 · 백원우 · 곽정숙 · 박기춘 · 전현희 · 안민석 · 박은수 · 김영진 · 김성순 · 우제창 · 김재윤 · 송영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2009. 3. 27 신상진·이한성·주광덕·신영수· 김성순・차명진・김종률・우제창・김성태・ 정해걸 · 유석용 · 이정선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09. 3. 30 김소남·김태원·조원진·강기정· 고승덕・김성수・김충조・한선교・강명순・ 이정선 · 안효대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09. 4. 1 남경필·정희수·박대해·유기준· 강명순 · 임두성 · 이경재 · 이계진 · 정병국 · 조윤선 · 원희룡 · 오제세 · 이인기 · 정태근 · 구상찬 · 정영희 · 정진석 · 유성엽 · 손범규 · 정몽준・김소남・손숙미・안효대・신영수・ 박민식·김성수·박선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 발의)

(2009. 4. 3 권선택·변웅전·심대평·이회창· 박선영 · 이재선 · 이명수 · 김용구 · 김낙성 · 이진삼 · 류근찬 · 임영호 · 박상돈 · 조순형 · 이상민·이영애·김창수·문국현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

(2009. 4. 3 박병석 의원 외 82인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 (2009. 4. 3 박병석 의원 외 83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4. 3 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4. 3 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4. 3 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09. 4. 6 나성린 · 배은희 · 유정현 · 신지호 · 이두아・이은재・이한성・유일호・황영철・ 김효재·조전혁·조진래·안효대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 발의)

(2009. 4. 7 최규식·양승조·김우남·홍재형· 최재성 · 김희철 · 박기춘 · 유원일 · 김상희 · 이용희・강성종・유성엽・김재윤・김충조・ 김종률 • 우제창 • 김영진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09. 4.7 최규식・양승조・김우남・강기정・ 박은수 · 김희철 · 홍희덕 · 박기춘 · 유원일 · 김상희 · 이용희 · 김성순 · 김영진 · 안홍준 · 황우여 · 유성엽 · 김재윤 · 김충조 · 김종률 · 우제창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천 의원 발의) (2009. 4. 9 박상천 의원 외 82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2009. 4. 13 유정복·안홍준·이진복·이학재· 이정현 · 서상기 · 이계진 · 김선동 · 김옥이 · 양정례 · 노철래 · 성윤환 · 정해걸 · 조전혁 · 이주영 · 홍장표 · 윤상현 · 정영희 · 주성영 · 정희수・손범규・황진하・유재중・이화수・ 임두성 · 황우여 · 최경환 · 강석호 · 조원진 · 이종혁·박대해·박보환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09. 4. 13 이한성·정희수·유기준·이해봉· 안상수 · 유성엽 · 진성호 · 김성태 · 신영수 · 이정선・황우여・이인기・손범규・이화수・ 김학송 의원 발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09. 4. 13 이한성·정희수·유기준·안상수· 김성태 · 신영수 · 황우여 · 이인기 · 손범규 · 이화수·고승덕·강성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09. 4. 15 김우남·박은수·박주선·백원우·

백재현·서갑원·안민석·양승조·이광재· 최철국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09. 4. 16 장윤석·이춘석·유기준·노철 래·손범규·임동규·신영수·허태열·이한 성·안상수·조윤선·이정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09. 4. 17 강기정·양승조·김동철·서갑원· 이미경·김재균·김우남·김상희·이석현· 이용삼·김충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09. 4. 20 김영선·이혜훈·유기준·김정권· 김태원·유승민·이화수·손범규·이해봉· 유성엽·안상수·윤상현·신영수·강석호 의 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09. 4. 20 이철우·강석호·김효재·손범규· 송영선·신영수·안상수·안효대·정희수· 허태열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 표발의)

(2009. 4. 20 이철우·강석호·김효재·손범규· 송영선·신영수·안상수·안효대·정희수· 허태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 발의)

(2009. 4. 24 김소남·진성호·황우여·안상수· 안효대·권경석·임두성·고승덕·원희목· 김성수·이한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 발의)

(2009. 4. 24 양정례·노철래·정영희·송영선· 박기춘·강운태·손범규·송민순·김을동· 정하균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 발의)

(2009. 4. 24 양정례·노철래·정영희·송영선· 박기춘·강운태·손범규·송민순·김을동· 정하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 발의)

(2009. 4. 30 성윤환·이한성·임동규·이정선· 이성헌·한선교·박기춘·변재일·박상돈· 박순자·원유철·정해결·강석호·배은희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2009. 5. 4 윤영·안효대·이해봉·송영선· 정희수·김성태·강석호·김충조·정갑윤· 임두성·안상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 발의)

(2009. 5. 8 권택기·조문환·손범규·윤석용· 강석호·박준선·황영철·이성헌·이사철· 남경필·김영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2009. 5. 12 이주영·유원일·신영수·현경병· 안효대·이정선·이한성·이윤성·손범규· 오제세·황영철·이낙연·진성호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09. 5. 13 강기정·양승조·김재균·강창일· 김우남·김동철·이미경·최규식·이석현· 김효석·최영희·김상희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 발의)

(2009. 5. 18 이정선·이한성·안상수·오제세·홍장표·임동규·주광덕·안효대·손범규·김소남·정미경·나경원·이성헌·유재중·유성엽·박은수·진성호·이정현·김영우 의원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 발의)

(2009. 5. 21 김종률·양승조·변재일·천정배· 김창수·이종걸·강창일·김영진·장세환· 김효석·이미경·강기정·박상돈·이명수· 박선숙·문학진·강봉균·우제창·김희철· 최규성·이낙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 발의)

(2009. 5. 25 신낙균·송민순·안규백·박주선· 우제창·강창일·이미경·최규식·박기춘· 이두아·김재윤·이인기·이낙연·서종표· 문학진·김상희·김춘진·전혜숙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9. 5. 28 이명수·김용구·고승덕·심대평· 박상돈·임영호·김을동·이상민·원유철· 이재선 의원 발의) 이상 174건 5월 29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 발의)

(2009. 6. 3 김소남·김성수·안효대·이정선· 이성헌·이화수·임두성·김효재·이한성· 김장수 의원 발의)

6월 4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9. 6. 4 양승조·안민석·강창일·강기정· 서갑원·백원우·전혜숙·김종률·김재윤· 전현희 의원 발의)

6월 5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경 의원 대표발의) (2009. 6. 8 이용경·김창수·김재윤·유성엽·심대평·임영호·유원일·이한성·문국현·김영진·김용구·전현희 의원 발의) 6월 9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09. 6. 15 이은재·배은희·이정선·강명순·김성회·정해걸·유일호·조진래·김성태·주광덕·강성천·윤석용·박준선·김선동 의원발의)

6월 16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발의) (2009. 6. 16 안상수 의원 외 169인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9. 6. 16 김우남·강창일·최규성·양승조· 강기정·조경태·이윤석·김동철·유성엽· 김재윤·송훈석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9. 6. 16 김우남·강창일·최규성·양승조· 강기정·조경태·이윤석·김동철·유성엽· 김재윤·송훈석 의원 발의)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9. 6. 16 김우남·강창일·최규성·양승조· 강기정·조경태·이윤석·김동철·유성엽· 김재윤·송훈석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2009. 6. 16 이종혁·김영선·김낙성·이성헌· 김용구·서상기·정갑윤·조원진·이진복· 김선동·김성수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17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09. 6. 23 장광근·손범규·이두아·정병국·정희수·이한성·이인기·백성운·안홍준·이계진·조윤선·허천·신영수·정수성·최연희 의원 발의)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09. 6. 23 장광근·안홍준·이한성·백성운·임동규·이계진·허천·신영수·최연희·최병국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09. 6. 23 장광근·안홍준·이한성·이인기·백성운·임동규·이계진·허천·신영수·최연희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9. 6. 23 심재철·김성회·권영진·이한성· 신영수·백성운·강석호·손숙미·나성린· 김소남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4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2009. 6. 25 이정희·조승수·김우남·유원일· 유성엽·박선숙·신학용·곽정숙·홍희덕· 권영길·김재윤·강기갑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

(2009. 6. 25 이정희·조승수·김우남·유원일· 유성엽·박선숙·신학용·곽정숙·홍희덕· 권영길·김재윤·강기갑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09. 6. 25 박주선·강창일·신학용·김동철· 김영진·송민순·최재성·이사철·최규식· 김재윤·강성종·양승조·강기갑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6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09. 6. 26 이상민·이주영·김창수·심대평· 이재선·권선택·안민석·김낙성·임영호· 박상돈·이낙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09. 6. 26 송영선·김을동·김성수·노철래· 박대해·김정권·정영희·이한성·정하균· 심대평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9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09. 7. 1 이춘석·전혜숙·변재일·양승조·조정식·안규백·김재균·우윤근·최철국·최문순·이종걸·박영선 의원 발의)

7월 2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 발의)

(2009. 7. 2 박상돈·권선택·김창수·심대평· 이명수·이상민·이재선·이용희·임영호· 주승용 의원 발의)

국회의 입법질서유지를 위한 특별법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

(2009. 7. 2 차명진·김금래·장제원·조전혁· 황영철·박준선·심재철·조해진·박종희· 신지호·주성영·김효재·최경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3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09. 7. 3 이철우·강석호·조전혁·이범래· 신지호·김동성·이은재·김성회·배은희· 나성린·정희수·정해걸 의원 발의)

7월 6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09. 7. 6 김태원·임동규·신영수·정수성·김영선·박상돈·강명순·정해결·정갑윤· 손범규 의원 발의)

7월 7일 회부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09. 7. 9 권영진·김성태·신성범·김선동·권택기·박민식·정태근·주광덕·황영철·김성식·조전혁·이한성·현기환·서상기·김세연·이인기·윤석용·남경필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09. 7. 9 권영진·김성태·신성범·김선동·박민식·정태근·권택기·황영철·주광덕·김성식·조전혁·이한성·현기환·서상기·김세연·김영우·이인기·윤석용·남경필·진영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2009. 7. 9 권택기·이한성·김성식·김성태· 신성범·김선동·정태근·박민식·황영철· 주광덕·정두언·현기환·이인기·김영진· 강석호·남경필·신영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0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9. 7. 16 강창일·김희철·박기춘·최영희· 변재일·강기정·김우남·송영길·조승수· 김재윤·이윤석·김동철·오제세·양승조· 신학용·이낙연 의원 발의)

7월 17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09. 7. 24 양승조·안민석·강창일·김종률· 전혜숙·유성엽·김성곤·원혜영·이두아· 최영희 의원 발의)

7월 27일 회부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

(2009. 7. 29 이춘석·강창일·김영록·김재균· 노영민·박영선·박은수·백원우·안규백· 전현희·주승용·최철국 의원 발의)

7월 30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 발의)

(2009. 8. 18 김성회·고승덕·김세연·김영진· 김성태·김충환·김춘진·노철래·박진· 박상은·박종희·여상규·이경재·이주영· 이철우·유기준·장윤석·정미경·조전혁· 황우여 의원 발의)

8월 19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09. 8. 19 신낙균·양승조·송민순·김우남・박선숙·전현희·조승수·우제창·최영희·김금래·박은수·김성곤·손범규·김춘진·안규백·박주선·문학진·전혜숙·곽정숙·이미경·추미애·박영선·김상희·김옥이·김유정·서종표·김성순·강창일·강운태·서갑원·조배숙·송훈석 의원 발의)

8월 20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2009. 8. 20 신영수·유기준·이한성·고승덕· 조전혁·임동규·한선교·권영세·김성태· 안효대·이해봉 의원 발의)

8월 21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 발의)

(2009. 8. 27 이은재·손숙미·이정선·강성천·고승덕·신지호·배은희·여상규·나성린· 강석호·윤석용·정미경·김금래·김소남 의원 발의) 8월 28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 발의)

(2009. 8. 28 박순자·김소남·손숙미·정미경· 강명순·공성진·이군현·이애주·이종구· 이정현·이화수·김옥이·이은재·조윤선· 김금래·안홍준·이한성·권경석·황진하· 정옥임·신상진·김성수·강승규·이병석· 박영아 의원 발의)

8월 31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 발의)

(2009. 9. 1 이성헌·김정권·손범규·이명수· 이한성·임두성·김성수·김낙성·고승덕· 신상진 의원 발의)

9월 2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9. 9. 3 임동규·이한성·배영식·강성천·임두성·정옥임·김소남·이애주·정진석·손숙미·원희목·김장수·김금래·이정선·강명순·배은희·김옥이·조문환 의원 발의) 9월 4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9. 9. 7 김영선·김성수·손범규·유승민· 김태원·이종혁·권영진·안효대·허태열· 고승덕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2009. 9. 7 정의화·강성천·황우여·강석호·정미경·박준선·이명수·김을동·박상은·허원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

(2009. 9. 7 정의화·유기준·강성천·유성엽· 황우여·한선교·강석호·정미경·박준선· 이명수·김을동·박상은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8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 발의)

(2009. 9. 8 박주선·최재성·조경태·이윤석· 박병석·김유정·이미경·신낙균·김충조· 오제세·최철국·김동철·최규식·이강래· 안규백·김재균·원혜영·김부겸·강기정· 장세환·노영민 의원 발의)

9월 9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

발의)

(2009. 9. 8 김효석·김영록·신성범·김종률· 조진래·이인제·송훈석·송광호·이용삼· 정병국 의원 발의)

9월 9일 회부됨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률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

(2009. 9. 9 노철래·강운태·김을동·정수성· 윤영·유정현·신학용·이윤석·김성수· 정진섭·박대해·이화수 의원 발의)

9월 1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2009. 9. 11 정갑윤·원유철·안효대·강길부· 이윤석·김성조·최병국·신성범·이진복· 김소남·김기현·최구식 의원 발의)

9월 14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 발의)

(2009. 9. 15 박준선·강성천·김성수·김성회· 김세연·박대해·박민식·서상기·이종혁· 이화수·정갑윤·조원진·황영철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9. 9. 15 김종률·양승조·박영선·김재윤·조승수·김성곤·이정희·강창일·신학용·우제창·박선숙·이석현·홍재형·변재일 의원발의)

이상 2건 9월 16일 회부됨

○청원 회부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에 관한 청원

(2009. 4. 21 2958 Muir Trail Drive, Fullerton, CA 92833 U.S.A 미주동포참정권 실천연합회장 김완흠으로부터 박준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9. 5. 28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3-2 대우 빌 2-1011 이병현 외 1212인으로부터 이시종· 최욱철·정해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5월 29일 회부됨

○의견 제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한 의견 제시 (2009. 6.19 의장 제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2009. 7. 6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출)